

발간사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밝았습니다.

새 세기의 도래는 누구에게나 의미를 주지만,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던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올해로 2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남북관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대규모 경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내에 변화의 쌍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미·일 등 우방국들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의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문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 속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 앞에 정부는 반목과 대결로 깊어진 남북간 분단의 강에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아 서로 조금씩 다가감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에서 내실있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제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이산가족 1세대에 대해서는 생사확인·상봉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북접근에 있어서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문화·예술·종교·학

술 등 다방면에서 북한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간 행사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인적 왕래 및 대북 접촉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실천」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0 통일백서」는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에 대한 종합적 기록입니다.

지난 2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0 통일백서」에는 이 같은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2000년 2월
통일부장관

제1장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제 1 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분단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특히 다소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냉전의 확산·조정·해체 등의 변화과정과 궤를 같이해 왔다.

우선 분단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의 확산과 함께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라 하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도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박정희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 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즉,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국제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1968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 미·소·일·중 4국간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1960년대 우리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북정책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간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거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하며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후속 실천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수락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을 필두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특히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시기 남북관계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또 한번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전의 해체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우리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으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 불바다’, ‘전쟁 불사’ 등의 발언으로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미·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94.10.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 까지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회피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 2 절 대북포용정책 추진 배경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1980년대 말 구 소련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20세기 후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서로 대립해 했던 국제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왔는 바, 이는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오염·테러·마약 등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역내국가가 내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 등 장벽을 넘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대결과 반목을 강요해 왔던 외적 요인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바탕으로 민족의 번영을 도모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21세기 우리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한반도문제 해결의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2. 현실적 대북 인식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희생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봉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미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봉괴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북한은 탈냉전의 정세변화에 합류하지 못한 채, 폐쇄와 통제의 길을 택함으로써 냉전종식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른바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심각한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조만간 봉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먼저 북한주민들의 경우 폐쇄체제하에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급격한 봉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만간 봉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 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그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조짐은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철천지 원수’라고 하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가 하면, 자존심을 꺾고 외부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호응해 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실리추구적인 태도는 대외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창리 지하 핵의 후 시설문제의 해결, 미사일발사의 잠정유예, UN총회에서의 적극적 외교활동 전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98년 9월 헌법개정시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독립채산제 및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핵심을 이루고 있는 원가·가격·수익성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가 하면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연수케 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보이고 있는 변화가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단 그 흐름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결국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각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는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대남혁명전략과 군사제일주의는 지난 50년 동안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준 가장 중요한 논리였으며,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또한 북한은 군사력마저 약하면 대남관계나 대외관계에서 입지가 급격히 저하될 것이며, 내부의 불만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봉괴위기에 직면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체제위기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적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이용한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기도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과 ‘안보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바탕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3.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

분단이후 '70년대 초반까지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바탕으로 북한은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었으나, 우리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70년대 중반에는 남북한 국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점차 남북간 국력격차가 커져 작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남북간 체제경쟁을 논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북간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1999년도 정부예산은 5년전 예산의 절반으로 줄어든 94억달러 수준이다. 1998년 북한의 무역고는 16억 6천만 달러인데 이는 북한이 가장 많은 무역고를 올렸던 '80년대 후반 50억 달러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서, 우리 무역고 2,265억 달러와 비교한다면 1/136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적 침체는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쳐 '90년대에 들어와서 군사력 증강이 정체상태에 빠졌다. 특히 장비의 노후화로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한미 안보동맹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전쟁억제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북한측 장비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자포자기식 도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평화를 지키는 정책」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1. 목표 및 원칙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즉,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닫힌 북한사회를 열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대정책을 포기케 하고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가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력적화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인식할 때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고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된다.

1999년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침범시 우리의 대응은 이같은 안보의지와 단호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흡수통일 배제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으며, 그 결과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현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 나가려는 것이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과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주로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 대결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남북간에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도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3원칙에 입각하여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 역사적 의미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포용정책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불개입 정책(benign neglect policy), 그리고 포용정책 등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봉쇄정책 또는 압박정책은 남북간에 대결과 대치상황을 더욱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상호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쿠바나 이라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봉쇄정책은 폐쇄성을 강화시켜 주고 대내적 단결을 촉진하여 독재체제를 장기화시켜 주는 반면,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와 상호 작용하면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는 우리가 봉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도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대남 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자행하는가 하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면에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억제’이다.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없으며, 민족 절멸의 위협이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적 안보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어떠한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략적 포용’이다. 인도적 대북지원 및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외의존도를 제고하여 개방과 체제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남도발 의지를 스스로 포기시키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이다. 남북대화, 국제협력, 군비통제, 평화체제전환 등을 통해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포용정책과 유사한 사례로서 미국이 유럽에서 사용한 데탕트 정책이 있다. 미국은 1975년 헬싱키 조약을 통해서 유럽 동서 진영간의 화해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데탕트 정책은 15년 후에 유럽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구 공산권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동구권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데탕트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북포용정책은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며, 역사의 큰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제 4 절 대북포용정책 주요 과제 및 추진 성과

1. 주요 과제

정부가 그 동안 대북포용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해 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남북간 교역이나 경협 등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장점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하에 정부간 협력에서는 남북이 주고받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는 것이다. 남북간 상호주의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연계된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의 국력격차가 현격한 현실과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을 돋기위한 대북지원은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생산성의 저하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오고 있다. 특히 ‘95년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서 식량부족이 가중되었다.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통해 우리의 지원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량 지원보다는 투명성과 효과면에서 월등한 비료지원 등 농업생산기반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 화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교류협력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민족의 장전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해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당국간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국간 대화의 성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간 대화 성사에 연연하기보다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특히 경제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실질관계가 구축되면 북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자연스럽게 당국간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당사자들이 고령화되고, 특히 이산의 한(恨)을 안은 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의 성격상, 생사확인·상봉 등 본격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당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를 늘려나가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추진 성과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많은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킨 것이며, 이는 또한 외환위기 등 경제난 극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이것이 불필요한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미·일 등 우방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도록 권고하여 한반도 냉전 종식을 추진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판문점 장성 급회담이 성사됨으로써 7년 동안 그 기능이 중단되었던 정전관리체제가 복원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9년 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인원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약 9,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1998년 이전 9년 동안 방북인원이 약 2,4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변화라 하겠다. 금강산관광이 실현된 것도 성과중 하나이며,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1999년 말까지 약 16만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남북간 교역도 1999년에 3억3천만 달러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처음으로 1억달러에 이르렀다.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1998년부터 1999년 12월 말까지 약 300여건의 가족상봉과 850여건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민간부분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당국간에도 1998년에 차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1999년에도 비공식 접촉과 공식 차관급회담이 각각 열렸다. 비록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회담은 이전 몇년 동안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1999년의 차관급당국회담은 서해교전사태로 결렬되기는 했으나 남북이 의제로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상정하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간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호 실리를 확보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량난 등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 추진 배경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국제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미국 등 우리 우방들의 대북정책을 그들에 대한 이른바 압살정책으로 이해하고 폐쇄와 통제 속에 안주한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같은 대결정책을 통해 체제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과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고조되었다. 당시 미국 의회 등 일부에서는 만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경우 이라크 방식처럼 공중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과 함께, 이 문제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문제는 이라크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바, 그것은 당면한 현안문제와 함께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도는 한반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대결과 협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위협을 철저하게 억제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2. 추진 경과

정부는 이처럼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폐리 미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면담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이 같은 우리의 입장 을 설명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고위급 정책협의회와 대북정책조정회의(TCOG)를 통해, 대북 포괄적 접근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 또한 폐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 접근에 호응해 나올 것을 설득하였다.

1999년 9월 미·북 베를린 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해 온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대

북포괄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폐리보고서를 공개하고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1999년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 등 초당파의원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3. 주요 과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상호위협 감소’와 ‘호혜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서 남북간 대결과 반목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냉전의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냉전종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주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실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북한과 우리 우방국인 미·일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우리 우방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기도할 경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에서 긴장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군비통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네 번째 과제는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로 개방과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 국제테러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ADB·IBRD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실현하는 것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평화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한반도에서는 불안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불안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자유로이 오고 가면서 돋고 나누는 평화적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일본과의 공조, 중국·러시아의 협조하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미·일을 포함해 한반도문제 당사자들이 안보문제와 함께 정치·외교·경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장기적인 과정인 만큼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으나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한 왕래
2. 북한주민 접촉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1. 남북한간 물자교역
2. 남북한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3.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남북경제협력사업
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제5절 금강산관광사업

1. 추진 경과
2. 개발사업으로 확대
3. 관광 현황
4. 금강산 관광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

정부는 1988년 「7.7 선언」으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이래,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남북한의 평화·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민간이 자율적 판단과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이 조치는 민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과 과당경쟁 방지 등 교류협력 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임을 밝혀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시행한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계속된 노력과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5,599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1998년 11월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1999년 12월 말까지 158,628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외국인 시범관광 66명 포함) 남북교역은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대되어 1999년 교역실적이 3억 3천만달러를 상회하였으며,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서해공단조성사업 등 대규모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도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공동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접촉 · 방북

- 방북요건을 구비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원칙화
 -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기업인 일반을 대상으로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20일→15일, 방북: 30일→20일)

□ 남북 교역

-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포괄승인품목」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생산설비의 무상 및 임대차 방식에 의한 반출 허용
 - 1회 100만불까지인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협력사업

- 투자 규모 제한 완전 폐지
 - 500~1000만불 내외의 투자규모 상한선 폐지
- 투자 제한 업종의 Negative List 화
 - 전략물자 관련 산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투자업종 규제방식 전환

※ 대북투자 제한업종

▶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기타 군사·전략기술의 대북이전이 우려되는 산업 또는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투자금액이 300만불 이하인 소규모 투자, 제3국에서의 주민 고용산업·용역거래행위, 기타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처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을 갖추어 온 것이다.

1998년에는 민간기업·단체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써 교류협력 관련 규제 총 40건 중에서 14건이 폐지되고 15건이 개선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하는 「금강산관광객등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를 제정(11.16)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10.21)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5.18)하여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8.16)하여 반출·반입 승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위탁가공용 물품의 반출·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출·반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외국인관광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5.28)하였다.

————— <법 · 제도 정비의 주요내용>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의 과세 특례(면세) 준용 ('98.10.23)
- 방문기간 연장승인제한 및 재외국민 방북결과보고 폐지, 증명서 발급 · 재발급 절차 간소화, 교역당사자 지정 및 교역에 관한 사항보고 폐지, 승인품목 축소, 반출입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등 ('98.12.31)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개정

- 북한사무소의 상주기간 제한(3년) 및 별도의 연장승인 폐지('98.12.31)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 남북한 왕래자가 승인을 받아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 휴대 금지품목을 축소('98.12.31)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를 통해 동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조정('99.5.28)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개정

- 협력사업자 ·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98.5.12)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인 사업계획서에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99.5.1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입승인대상품목 조정, 위탁가공용 설비 · 원부자재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반출입 관련 서식의 근거 마련 등('99.8.16)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 변경신청,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조건 변경신청, 북한원화매매 신청,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사전협의절차 폐지('98.12.31)
- 남북주민간 왕래지원자금 신청, 문화 · 학술 · 체육협력지원자금 신청 등 의 신청서 2부를 1부로 축소('98.12.31)

————— <법·제도 정비의 주요내용> —————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 경제협력사업자금, 교역대상물품반출 및 반입자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반출자금의 일부(50%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연6%의 금리로 대출('99.10.21)

- 대출자금별 기본요건, 융자조건, 우선 지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 규정
(* 주요 내용 후술)

□ 「금강산관광객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제정·개정

- 금강산관광객은 개별적인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한 북한방문 승인공문만으로 방북('99.11.16)
 -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관광선 안내원은 수시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고, 승인기간 중의 북한방문 신고는 면제
- 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신청서와 금강산관광신청서를 일원화('99.5.18)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가. 남북협력기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9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600만원, 운용수익금 1,436억 8,400만원, 국채관리기금예수금 1,498억 3,100만원 등 총 8,290억 6,100만원이 조성되었다.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정부예산에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반영되었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199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정부출연	25,000	40,000	40,000	40,000	240,000	100,000	50,000	-	-	535,000
민간출연	-	-	4	-	119	132	288	-	3	546
운용수익	237	5,118	4,777	9,387	14,589	18,410	27,873	40,280	23,013	143,684
국채관리기금예수금	-	-	-	-	-	-	-	-	149,831	149,831
계	25,237	45,118	44,781	49,387	254,708	118,542	78,161	40,280	172,847	829,061

남북협력기금은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 사업 지원이나 쌀 직교역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에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에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사전 용역비 600만불을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불을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10만톤을 지원하는데 약 180억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1999년 12월말 현재 총 3,385억 6,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이 밖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9년 12월말 현재 4,904억 9,2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중 1,80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자금 1,498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3,104억 9,2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기금을 주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수로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용도에 사용하였고,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여 왔다. 정부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98.4.30)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경협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내 열악한 투자환경, 과다한 물류비, 당국간 제도적 보장장치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싼이자로 경협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 10월 21일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 등으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분야별(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 시범적·전략적 사업과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소요 자금의 50% 이내로 한정되는데, 이는 기업들이 자기책임 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는 한편,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후원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199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 도	내 역	금 액
'91	○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 쌀 직교역 손실보조(천지무역)	164 786 1,268
	소 계	2,218
'92	○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보전	551
	소 계	551
'95	○ 대북 쌀 15만톤 지원	185,435
	소 계	185,435
'96	○ 대북 기상장비 지원(WMO) ○ 유엔기구 제2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 대북 경수로사업 사전용역비 지원(KEDO)	40 2,435 4,882
	소 계	7,357
'97	○ 유엔기구 제3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UNDP 등) ○ 대북 탈수방지약공장 복구 지원(UNICEF)	24,597 304
	소 계	24,901
'98	○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 유엔기구 제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 ○ 남북공동사진전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67,523 14,108 30 13
	소 계	81,674
'99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민간참여분) ○ 대북 비료 10만톤 지원(민간모금분 제외)	421 15,991 17,917
	소 계	34,329
합 계		336,465

* 한국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104백만원 별도 집행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유상지원(대출)방식으로 운영(소요자금의 50% 범위내)
- 우선 지원기준 설정
 - ① 중소기업
 - ② 분야별(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 시범적 · 전략적 사업
 - ③ 동일조건의 경우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

▶ 지원 대상

- 경제협력사업(대북투자) 자금대출
- 기본요건
 -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우선 지원대상 : ▲농 · 어업 협력사업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
- 교역물품 반출 · 입 자금대출
-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교역을 진행중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물품 반출 · 입 실적이 있는 자
- 우선 지원대상
 - ▲직계약 방식의 교역
 -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 · 보건 관련 물품의 반출
 - ▲농업분야 계약재배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의 반입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 설비 반출 자금대출
-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위탁가공을 시행하는 자
- 우선 지원대상 : ▲국내 유통설비를 이전하는 자

▶ 지원 범위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대출 조건

- 이자율 : 6%(지연배상금률 : 15%)
- 대출기간
 - 경제협력사업 :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교역대상물품 반출 · 입 및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 1년 이내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특별히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에 대하여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한 왕래

가. 개황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1,613건(13,031명), 승인 1,529건(12,359명), 성사 1,405건(11,321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6건(669명), 승인 15건(659명), 성사 13건(637명)이다.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 이래 1999년 12월 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8,742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의 방북인원 2,408명의 3배를 넘어섰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1999년 12월 말 현재 158,628명(외국인 시범관광 66명 포함)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 회의 참석차 3명의 북한주민이 서울을 방문한 이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9년 12월 제2차 통일농구대회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현대측 초청으로 62명의 북한 농구단 및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재개되었다.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89.6.12~'99.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1(1)	1(1)	1(1)
	남한방문	-	-	-
1990	북한방문	7(199)	6(187)	3(183)
	남한방문	5(306)	5(306)	4(291)
1991	북한방문	12(244)	11(243)	10(237)
	남한방문	3(175)	3(175)	3(175)
1992	북한방문	17(303)	8(257)	8(257)
	남한방문	4(113)	3(103)	3(103)
1993	북한방문	6(21)	5(19)	4(18)
	남한방문	2(6)	2(6)	2(6)
1994	북한방문	12(78)	7(54)	1(12)
	남한방문	-	-	-
1995	북한방문	64(563)	58(543)	52(536)
	남한방문	1(7)	1(7)	-
1996	북한방문	50(249)	35(170)	28(146)
	남한방문	-	-	-
1997	북한방문	156(1,194)	149(1,172)	136(1,015)
	남한방문	-	-	-
1998	북한방문	402(3,980)	387(3,716)	340(3,317)
	남한방문	-	-	-
1999	북한방문	886(6,199)	862(5,997)	822(5,599)
	남한방문	1(62)	1(62)	1(62)
계	북한방문	1,613(13,031)	1,529(12,359)	1,405(11,321)
	남한방문	16(669)	15(659)	13(637)

< 1999년도 분야별 남북왕래 현황 >

('99.1.1~'99.12.31, 단위:명)

구 분	관 광 (실 무)	경 제	사 회 문 화	경 수로 사 업	대 북 지 원	이 산 가 족 (교류주선)	계
방북인원	3,744	245	329	911	364	6	5,599

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방북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1999년 12월 말까지 관광선이 총 278회 운항되어 158,628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1999년에는 「금강」·「봉래」·「풍악」호가 차례로 매일 운항되면서 월 평균 12,000여 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대관계자 등 실무인력의 방북이 계속되었다. 1999년에는 12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인력 3,744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부두시설, 공연장·온천장 등 관광편의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코스 다양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금강산 관광객 및 관광 실무인력의 북한방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 경제 분야 관련 방북

199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8일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재개되었다. 기업인방북은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북 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남북간 정치적 상황 변화와 연계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와 기업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인 방북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성남전자, IMRI(컴퓨터모니터 제조업체) 등 위탁가공 교역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면서 기업인, 기술자들의 북한내 체류 기간이 한 달 내외로 까지 늘어났다.

1999년에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엘칸토 등이 기술지도를 위해 방북하였으며, 삼성전자도 전자제품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지도를 위한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1999년 12월 말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인원의 방북을 제외하고 신청 97건(323명), 승인 84건(293명), 성사 73건(245명)이었다.

특히 1998년 4월 또 한차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협의차 북한을 방문하였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같은해 10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했고, 1999년에도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조성사업에 관해 북한 최고위층과 직접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1999년에는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임가공 및 공단조성 협의 차 방북하고, 국제옥수수재단이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생육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 차례 방북하는 등 대북투자, 교역협의 등을 위한 북한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라.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 공연, 남북 통일축구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 등 남북 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까지는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이를 위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7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를 위한 사회문화협력사업이 시작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 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9년 한해 동안의 사회문화분야 방북은 신청 46건(386명), 승인 42 건(367명), 성사 37건(329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금강산국제그룹이 주관하는 「제1차 원로화가 북녘산하기행」을 통해 우리 화가 10명이 평양·묘향산·백두산을 방문하였고, 남북대중가수 합동공연인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평양공연과 「민족통일음악회」 평양공연이 개최되어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경기를,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가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 평양경기를 개최하여 우리측 관련 인사들의 방북이 성사되는 등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마.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부지조사단 및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1997년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 한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에서 개최한 두 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1.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는 199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9년에 와서야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측 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재개되었다. 통일농구대회 서울경기 참가를 위한 북한 방문단은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하여 남녀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아·태 관계자 8명, 중계기술자 2명 등 총 62명이었다.

통일농구경기대회를 개최한 현대와 북측의 아·태는 체육교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 1999년 평양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도 2000년에는 서울에서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주민접촉

가. 개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신청 19,680건(34,444명), 승인 19,287건(32,921명), 성사 4,331건(10,9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주민 접촉은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을 겪으면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이산가족 분야,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에서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주민접촉은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연도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 >

(‘89.6.12~’99.12.31, 단위:건(명))

연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계	19,680(34,444)	19,287(32,921)	4,331(10,967)

나. 관광사업 관련 접촉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신청 166건(524명), 승인 158건(496명), 성사 47건(145명)으로 집계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북경 등지에서 현대와 아·태 관계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도 북경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수 차례 열렸으며, 6월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북경에서 현대-아·태 관계자간의 접촉(6.20~6.25)이 있었다.

다. 경제 분야 접촉

경제 분야의 북한주민접촉 현황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신청 3,456건(8,643명), 승인 3,354건(8,391명), 성사 1,765건(3,038명)에 이르고 있다. 1999년에는 12월 말 현재까지 신청 463건(852명), 승인 459건(874명), 성사 266건(477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북경, 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을 시작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북투자 협의('99.1.20, 북경), SK 상사의 의류분야 투자협의('99.5.16, 북경),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기분야 협력사업 협의('99.10.30~11.1, 북경) 등 대북투자 상담과 교역관련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이 성사되었다.

라. 사회문화 분야 접촉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신청 479건(3,623명), 승인 441건(3,006명), 성사 154건(1,976명)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신청 44건(621명), 승인 42건(314명), 성사 21건(276명)으로 전년보다 접촉인원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중국지역의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 지역에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다. 1999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4차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7.25~29, 북경), 제4회 우리말 컴퓨터처

리 국제학술대회(8.13~15, 연길)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10.26~27, 북경)등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의 신청 338건(1,481명), 승인 288건(1,380명), 성사 98건(747명)으로 집계되었다. 1999년에는 12월말 현재 신청 58건(164명), 승인 51건(146명), 성사 30건(98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99년 주요 접촉 사례로는 한민족아리랑연합회의 북한 아리랑 음반제작 협의(7.13, 동경),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2000년 광주비엔날레 북한 특별전 추진을 위한 협의(10.23~26, 북경) 등이 있다.

체육분야에서는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신청 192건(927명), 승인 181건(882명), 성사 58건(518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30건(96명), 승인 28건(79명), 성사 14건(29명)의 북한주민 접촉이 이루어져 건수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999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한국항공스포츠협회의 남북통일횡단비행 추진협의(4.7~4.9, 북경), 제2회 5개국 프로복싱대회 참가(8.16~23, 심양), 현대 노장축구회의 남북원로축구 친선경기 추진협의 및 참가(9.4~6, 단동)등이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신청 331건(1,603명), 승인 277건(1,451명), 성사 114건(875명)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신청 32건(222명), 승인 32건(218명), 성사 20건(14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1999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종교인 북경평화대회(4.24~27, 북경), 남북천도교 최고 지도자 북경회담(8.24~26)등이 있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신청 268건(700명), 승인 229건(603명), 성사 54건(147명)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신청 31건(77명), 승인 31건(72명), 성사 9건(17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1999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의 방송교류 및 문화사업 협의(6.22, 북경), 나우콤의 남북어린이 바둑대회 개최 및 인터넷 생중계 협의(11.16, 북경) 등이 있었다.

또한 (주)두산이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조선인포뱅크」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단순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원가입, 전자우편 · 주문판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두산은 백과사전을 편찬하면서 「조선인포뱅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북한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 · 통신망 연결

1. 남북한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 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취해지면서 재개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교역량이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대되어 1993년부터는 줄곧 2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제품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교역 확대,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 반출 등으로 남북 교역규모가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

에는 IMF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환율상승 등 교역여건 악화로 교역량이 2억 21,943천달러에 그쳐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28%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국내 경기회복, 위탁가공교역 증대, 금강산 관광사업 · 대북경수로건설사업 등 경협사업 진전에 힘입어 교역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1999년 현재 교역규모는 3억 33,437천달러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고, 그간 교역규모가 가장 많았던 1997년에 비해서도 8.1%가 늘어났다.

< 남북교역 현황 >

(‘89~'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94	829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합계	12,013		1,466,173	14,835		634,896	26,848		2,101,069

* 주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남북한간 교역수지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남북교역은 남한의 북한물품 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KEDO 중유지원, 대북 쌀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비거래성 반출은 1997년에 시작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의 대북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계속 증가하였다. 북한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남북교역을 통해 연평균 1억 300만달러 이상의 흑자(실질교역수지 기준)를 보고 있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89~’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89	18,655	69	18,724	△ 18,586	-
’90	12,278	1,188	13,466	△ 11,090	-
’91	105,719	5,547	111,266	△ 100,172	
’92	162,863	10,563	173,426	△ 152,300	
’93	178,167	8,425	186,592	△ 169,742	
’94	176,298	18,249	194,547	△ 158,049	
’95	222,855	64,436	287,291	△ 158,419 (△ 169,414)	연평균 △ 111,478
’96	182,400	69,639	252,039	△ 112,761 (△ 127,016)	(△ 131,296)
’97	193,069	115,270	308,339	△ 77,799 (△ 133,049)	
’98	92,264	129,679	221,943	37,415 (△ 40,629)	
’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 53,929)	
합계	1,466,173	634,896	2,101,069	△ 831,277 (△ 1,131,190)	

* ()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 형태 · 품목

남북교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업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다만, 교역물품은 남북한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어 간접교역의 경우에도 물품운송은 남북한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교역 초기에는 북한물품의 반입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비거래성 물자를 중심으로 한 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1999년에도 KEDO 중유, 대북지원 비료,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이 크게 늘어나 반출금액이 반입금액을 크게 초과하였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의 반입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 까지는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70%를 차지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의 반입이 70%를 넘어섰다.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되는 한편, 북한의 에너지난·물자난으로 철강금속제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9년의 주요 반입품목은 섬유류 37.4%, 농림수산품 39.4%, 철강금속제품 13.3% 등으로 농림수산물의 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섬유류, 금괴 등 광산물의 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반출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인 섬유류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KEDO 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을 위한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북경수로건설사업·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사업 추진에 따른 현물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계류·운반용 기계 등의 반출도 늘어나고 있다.

1999년의 반출품목은 비금속광물제품 23.9%, 화학공업제품 20.2%, 섬유류 17.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2.7%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반입품목 현황 >

('89.1 ~ '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농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생산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 및 전기	기타제품	합계
'89	2,352 (12.6)	1,094 (5.9)	104 (0.6)	5 (0.0)	15,072 (80.0)	24 (0.1)	0 (0.0)	4 (0.0)	18,656 (100.0)
'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4,529 (36.9)	14 (0.1)	0 (0.0)	376 (3.1)	12,278 (100.0)
'91	10,818 (10.2)	21,520 (20.4)	5,732 (5.4)	0 (0.0)	67,303 (63.7)	17 (0.0)	0 (0.0)	329 (0.3)	105,719 (100.0)
'92	16,906 (10.4)	43,866 (26.9)	13,064 (8.0)	3,385 (2.1)	83,514 (51.3)	797 (0.5)	4 (0.0)	1,329 (0.8)	162,864 (100.0)
'93	12,015 (6.7)	87,277 (49.0)	1,528 (0.9)	8,477 (4.8)	64,647 (36.3)	0 (0.0)	80 (0.0)	4,144 (2.3)	178,167 (100.0)
'94	15,250 (8.7)	75,468 (42.8)	1,246 (0.7)	18,515 (10.5)	63,069 (35.8)	0 (0.0)	0 (0.0)	2,750 (1.6)	176,298 (100.0)
'95	22,319 (10.0)	86,562 (38.8)	347 (0.2)	28,833 (12.9)	81,629 (36.6)	9 (0.0)	6 (0.0)	3,150 (1.4)	222,855 (100.0)
'96	23,455 (12.9)	64,807 (35.5)	555 (0.3)	44,460 (24.4)	44,260 (24.3)	91 (0.0)	1,697 (0.9)	3,076 (1.7)	182,400 (100.0)
'97	27,326 (14.2)	48,313 (25.0)	15,677 (8.1)	47,091 (24.4)	47,946 (24.8)	999 (0.5)	3,140 (1.6)	2,578 (1.3)	193,069 (100.0)
'98	21,798 (23.6)	765 (0.8)	2,427 (2.6)	38,794 (42.0)	20,254 (22.0)	698 (0.8)	3,518 (3.8)	4,010 (4.3)	92,264 (100.0)
'99	4,786 (39.4)	2,462 (2.0)	2,494 (2.1)	45,513 (37.4)	16,120 (13.3)	1,557 (1.3)	2,838 (2.3)	2,707 (2.2)	121,604 (100.0)

< 반출품목 현황 >

('89.1 ~ '98.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일차산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비금속광물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자 및 전기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잡제품	합계
'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0 (0.0)	1,095 (92.2)	0 (0.0)	1,188 (100.0)
'91	1,607 (29.0)	1,819 (32.8)	216 (3.9)	1,392 (25.1)	66 (1.2)	0 (0.0)	0 (0.0)	447 (8.1)	0 (0.0)	0 (0.0)	5,547 (100.0)
'92	64 (0.6)	5,214 (49.4)	2,369 (22.4)	135 (1.3)	717 (6.8)	85 (0.8)	1,957 (18.5)	0 (0.0)	22 (0.2)	0 (0.0)	10,563 (100.0)
'93	69 (0.8)	920 (10.9)	732 (8.7)	1 (0.0)	5,581 (66.2)	20 (0.2)	260 (3.1)	463 (5.5)	121 (1.4)	260 (3.1)	8,425 (100.0)
'94	3,317 (18.2)	1,499 (8.2)	152 (0.8)	79 (0.4)	12,077 (66.2)	255 (1.4)	274 (1.5)	160 (0.9)	56 (0.3)	379 (2.1)	18,249 (100.0)
'95	10,754 (16.7)	906 (1.4)	1,961 (3.0)	11,363 (17.6)	34,986 (54.3)	1,465 (2.3)	199 (0.3)	262 (0.4)	1,548 (2.4)	991 (1.5)	64,436 (100.0)
'96	6,715 (9.6)	2,506 (3.6)	3,069 (4.4)	13,666 (19.6)	36,340 (52.2)	1,907 (2.7)	290 (0.4)	2,172 (3.1)	960 (1.4)	2,013 (2.9)	69,639 (100.0)
'97	17,048 (14.8)	2,877 (2.5)	5,888 (5.1)	30,399 (26.4)	33,970 (29.5)	3,565 (3.1)	3,948 (3.4)	3,319 (2.9)	13,098 (11.4)	1,160 (1.0)	115,270 (100.0)
'98	19,944 (15.4)	5,054 (3.9)	4,717 (3.6)	21,467 (16.6)	28,543 (22.0)	3,707 (2.9)	9,475 (7.3)	5,495 (4.2)	28,923 (22.3)	2,355 (1.8)	129,679 (100.0)
'99	17,834 (8.4)	42,691 (20.2)	4,962 (2.3)	50,542 (23.9)	36,286 (17.1)	3,832 (1.8)	16,953 (8.0)	7,307 (3.4)	26,985 (12.7)	3,484 (1.6)	211,832 (100.0)

라.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보내 가공한 뒤 완성된 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최초로 위탁가공교역으로 학생용 가방을 생산한 이래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97년에는 79,069천달러에 이르러 전체 교역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지속되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70,988 천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위탁가공 교역규모가 99,620천달러에 이르러 전년보다 40.3%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도 전체 교역규모의 29.9%, 거래성 교역규모의 5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이며 가방, 신발, 완구, 시트커버 등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컬러TV, 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용 모니터, 마이크 등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임가공 기술지도를 위한 우리 기술자들의 방북이 성사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성남전자 등 11개 기업, 65명이 북한을 방문, 기술지도를 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35건 848만불로 1999년에만 17건, 541만불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1999년 현재 위탁가공업체 수는 132개로써 1998년의 72개 업체에 비해 60개가 늘어났다. 설비반출이나 참여업체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탁가공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북한 내 위탁 가공지역도 평양, 남포 중심에서 신의주, 나진·선봉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삼성이 북한의 개선무역총회사와 컬러 TV,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등 3개 품목의 전자제품에 대한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탁가공교역 >

('89.1 ~ '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89	18,655	-	69	-	18,724	-
'90	12,278	-	1,188	-	13,466	-
'91	105,719	-	5,547	-	111,266	-
'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합계	1,466,173	213,357	634,896	190,123	2,101,069	403,480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도	'95	'96	'97	'98	'99.10월	계
건 수	2건	6건	4건	6건	17건	35건
금 액	532	670	490	1,380	5,412	8,484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년도	'92	'93	'94	'95	'96	'97	'98	'99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2. 남북한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999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714회로 전년 대비 184.7%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731회로 전년대비 181.2%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983회로 전년대비 187.4% 증가하였다.

<남북한간 선박운항 현황>

('99.12.31 현재, 단위: 회)

구 분	'94.7~12	'95	'96	'97	'98	'99	계
남 한→북 한	27	99	101	113	260	731	1,331
북 한→남 한	70	208	221	244	342	983	2,068
합 계	97	307	322	357	602	1,714	3,399

1999년 남북한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983,61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6.2%가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780,593톤으로 전년대비 97.1%증가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203,019톤 으로 25.2%가 증가하였다.

<남북한간 물동량 현황>

('99.12.31 현재, 단위:톤)

구분	'94.7~12	'95	'96	'97	'98	'99	합계
남 한→북 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1,973,852
북 한→남 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1,279,522
합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3,253,374

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 · 운영

1997년 10월 7~9일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일~6일까지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가 항공로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 항공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9월 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91년 제47차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남한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의 아시아북부횡단철도 연결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제안하였고, 1992년 제48차 총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타당성 조사에 의해 ① 한국-북한-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② 한국-북한-러시아-유럽, ③ 북한(나진)-러시아-유럽, ④ 중국(연운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⑤ 중국-몽골-유럽, ⑥ 러시아-유럽 등 6개의 대안노선이 제시되었다. 1995년 ESCAP 회의에서는 각 대안노선의 운행시간, 요금,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 제52차 ESCAP 총회에서는 ‘수도와 수도의 연결’ 및 ‘주요 국제교통로에 대한 방해받지 않은 접근’을 ‘아시아 북부육상교통망사업(ALTID)’의 추진원칙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북부 횡단철도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은 우선 ‘아시아북부노선 타당성 조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실제적인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단계 시범운행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철도연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대륙연결 육상교통망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

3.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가. 남북간 통신망 연결현황

1999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가 29회선,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가 16회선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현황>

('99.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장간	1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97. 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17
합	계	29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총16회선으로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 부지에 파견된 남한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현황>

('99.12.31 현재)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97. 8. 4
금강산 관광지원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98. 11.17
		2	'99. 5.18
합계		16	

나.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위한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고 1999년 5월 18일 추가로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8회선으로 늘어났다. 2단계 사업은 북한내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남북간 통신회선을 3,000회선까지 확충하는 사업으로 1999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3단계사업은 금강산 관광지역내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될 경우 착수될 장기 사업이다.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남북경제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2. 10. 5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1999년 12월말까지 총 4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15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1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8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

('99. 12. 31 현재)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 대 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재킷 등 생산	512만불	남포	'92.10.5 ('95. 5.17)
고합물산	의류·봉제, 직물 등 4개사업	686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95. 5.17
한일합섬	스웨터,봉제,방적 등 4개사업	980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95. 6.26
국제상사	신발	350만불	남포 또는 나진·선봉	"
※ 녹십자	헬전증치료제 제조 사업	311만불	평양	'95. 9.15 ('97.11.14)
동양시멘트	시멘트 사일로(silo) 건설	300만불	나진·선봉	"
동룡해운	하역설비(크레인 등)	500만불	나진·선봉	"
삼성전자	나진선봉 통신센타	700만불	나진·선봉	'96. 4.27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태 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만불	강원도 고성 ('97. 5.22)	'96. 4.27
대우전자	TV 등 가전제품 생산	640만불	남포	"
※ 한 전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11,430만불	신포	'96. 7.19 ('97. 8.16)
※ 미홍식품	수산물 채취 · 가공	47만불	청진 등	'97. 5.22 ('98. 3.13)
▲신일피혁	피혁 · 의류 봉제	300만불	나진 · 선봉	"
한 화	PVC장판 제조	90만불	평양 · 남포	'97. 5.22
LG전자 /LG상사	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	450만불	평양	'97.5.22
※ 한국통신	경수로건설 통신지원사업		신포	'97. 8. 1
삼성전자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 생산	500만불	나진 · 선봉	"
코오롱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400만불	평양 · 남포	"
신 원	의류 · 봉제사업	100만불	평양	"
파라우수산	수산물 생산 · 가공	300만불	원산, 해주	"
금오식품	냉면 · 고구마전분 제조	40만불	평양	"
한국토지공사	나진 · 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나진 · 선봉 (유현지구)	'97.10.14
대상물류	나진 · 선봉 국제물류 유통 기지 개발 · 운영	420만불	나진 · 선봉 (동명지구)	"
삼천리자전거 /LG상사	자전거 조립 · 생산	800만불	나진 · 선봉	"
※ 태영수산/LG	가리비 양식 · 생산	65만불	나진 · 선봉	" ('98. 8.28)
※ 외환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신포	'97.11. 6
※ 아시아뮤니케이션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20만불		'97.11.14 ('98. 2.18)
에이스침대	침대 및 가구 제조 · 판매	425만불	평양 낙랑구역	'98. 1. 9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롯데제과	과자류(쵸코파이) 생산 · 판매	575만불	평양 락랑구역	”
광 인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간판, 내부벽 면 부착광고 등) 사업	250만불	평양, 나진 · 선봉	'98. 2.18
안성개발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50만불	남포	'98. 3.13
※ 두레마을	합작농장 경영 및 계약재배	200만불	나진 · 선봉	'98. 4. 8 ('98. 7.27)
※국제옥수수 재단	신품종 옥수수 개발 및 공 동농업연구	220만불	북한 전지역	'98. 6.18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 스폰서쉽 대행	미정		'98. 8. 6
※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1억33만불	금강산	'98. 8. 6 ('98. 9. 7)
※ 코리아랜드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 · 분 양) 및 컨설팅업	60만불	평양	'98. 8.28
▲성화국제 그룹	원정 국제자유시장 건설 · 운영 및 평양 지역내 백화점 운영	190만불	나진 · 선봉 평양	'98. 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미정	.	'98.10.17
※ 백산실업	버섯 및 버섯배지 생산	20.8만불	나진 · 선봉	'98.10.28
※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 력사업(1단계 : 온정리 ~ 장 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13만불 (1단계)	금강산지역	'98.11.11
해주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299만불		'99. 1. 8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3억불	남포	'99. 8.31

(▲ 표시된 4개 기업은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지는 등 사정변경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99.12.23))

나. 공단개발사업 분야 협력사업

현대가 서해안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1999년 10월1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은 현대의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아·태간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어 공단부지조사가 시작되었다. 1차 부지조사단이 11월15일에서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신의주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측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해주, 남포 등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는 이러한 현장조사를 거쳐 전력·용수·물류환경·시장접근성·노동력 확보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부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도 전자제품 임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전자복합단지를 북한 내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에 의한 북한내 공단개발사업이 다른 기업의 대북진출 기회를 넓히고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협여건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의 셔츠·가방·재킷 생산사업, 태창의 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생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태창과 녹십자의 제조설비 반출 및 설치가 추진되어 2000년 상반기 중에는 금강산샘물, 혈전증 치료제 등의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국내에 시판될 예정이다.

또한 평화자동차가 남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협력사업자 승인(8.31)을 받았다. 평화자동차는 북한 연봉총회

사와 자동차공장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6년까지 연간 10,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 농·어업 분야 협력사업

농·어업분야 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어업 분야 구조개선을 도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1999년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내 1,000개 지역 10,000ha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김순권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998년~1999년 사이에 10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북한산 일담배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남북공동브랜드 담배임가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99년산 일담배 1,000톤을 검수하였으며, 담배제조설비를 반출하고 시험가동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남북 공동브랜드 담배가 생산될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1999년에 (주)해주가 북한수산물을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수협중앙회 등이 우리 감척어선을 활용한 남북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은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관리위원회(PMC)를 비상설기구로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실무그룹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TRADP 회원국들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와 접경 3개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제6차 PMC회의('95.12.4~7, 뉴욕)에서 「두만강경제개발 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그간 1996년 4월 한·UNDP 신탁기금으로 100만달러를 출연한데 이어, 북한 등 회원국의 투자촉진 지원센터 건립,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추진에 92만달러를 지원하였다. 1999년에는 5개국 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과 「두만지역 투자·자원서비스」(TRIS) 및 「동북아두만지역투자공사」 설립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TRADP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통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해 최초의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같은 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포르투갈) 남북단일팀 참가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 북한 핵문제·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이 전혀 성사되지 못하다가 1997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 문화유적 답사·조사사업이 추진되면서 재개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남북교류 열기가 고조되고, 북한측도 우리측의 사회문화 교류 제의에 대해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회문화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1년 이후 1999년 12월말 현재까지 17개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는 바, 이중 스포츠아트, 한민족복지재단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8년에 이루어졌고, 현대 아산, SN21엔터프라이즈 등 9개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

이 중 13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1998년에는 문화예술, 방송·언론,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5개 사업이, 1999년에는 체육분야에서 2건(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교류사업, '99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자동차랠리), 문화예술분야에서 3건('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남북대중음악회, 평양교예단 남한방문공연)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99.12.31 현재)

사업자	북측상대자	사업 내용(지역)	투자규모	승인일
※대한 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 세계선수권대회('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 · 참가(일본)	7억 9천만원(남북 협력기금)	'91.3.21
※대한올림픽 위원회	북한올림픽 위원회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 · 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남북협력기금)	'91. 5.1
※통일문화 연구소	조선아세아태 평양평화위원회 · 조선중앙 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 · 조사(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불	'97.12.10
※연변과기대 후원회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99.6.29)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 · 선봉내 과기대 설립 · 운영 (나진 · 선봉)	500만불	'98.1.9
문화방송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불	'98. 3. 13
※한민족복지 재단(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 · 선봉)	240만불	'98. 4. 8
※스포츠아트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불	'98. 4. 29
※한국 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 맹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 · 평양) 및 사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98. 4. 29
※경향신문 한민족문화 네트워크 연구소	금강산 국제그룹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98. 5. 11

사업자	북측상대자	사업내용(지역)	투자규모	승인일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 원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98. 8. 6
*우인방커뮤 니케이션 · 한국자동차경 주협회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창원→금강산 자동차랠리	100만불	'99. 2. 9
*(주)CNA 코리아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 · 서울공연	100만불	'99. 3. 25
MBC 프로덕션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남북공동 음반(CD원판) 제작	68만불	'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 진사업	미 정	'99. 7. 21
*SN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남북대중음악회 방북공연	75만불	'99. 8. 5
*(주)현대 아산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만불 (남북한총투자 액: 5,750만불)	'99. 9. 2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불	'99. 9. 2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나. 문화예술 분야 추진 현황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5월에는 리틀 엔젤스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10월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윤이상음악회」를 평양에서 열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99년 초부터 후속 서울공연(만경대소년학생궁전 예술단 서울공연, 윤이상 음악회 서울공연) 및 클래식과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제로 한 평양·서울 교환공연이 추진되었다. 1999년 12월 5일에는 KORECOM과 SBS 주관으로 남한측 인기가수들이 북한을 방문,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으며, SN21엔터프라이즈와 MBC도 12월 20일 평양에서 남북한 대중가수 합동공연인 「민족통일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계명프로덕션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 교예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9년 말 현재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는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북한 미술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남북한 합작으로 극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계획되고 있다.

다. 체육분야 추진 현황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에 와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 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9.29)하였다. 현대측은 북한측과 6개월 간격으로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에는 북한 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12.22~25)를 열었다.

라. 언론 · 출판분야

언론 · 출판 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 조사」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통일문화연구소는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 문화유적 등을 취재하였다. 이외에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동아일보, 월간 「말」 등이 각각 두 차례씩 방북하였다. 언론사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은 특집기사 게재,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및 전시활동 등에 활용되었다. 1998년 스포츠아트가 제작한 「평양리포트」가 SBS에서 방영되고 1999년 SBS가 「조경철 박사의 52년만의 귀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한 것이 그 사례이다.

제5절 금강산관광사업

1. 추진 경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1989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98년 초부터 정부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 북측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협의를 재개하였다. 1998년 6월 16~23일간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은 북한을 방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고 1998년 6월 22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 · 태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에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문제」, 「통신보장문제」, 「공동해난구조문제」 등이 합의되면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8년 9월 7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한간 최초의 관광분야 협력사업으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 협력사업 승인 현황 >

기 업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현대상선/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금 강 산 관광사업	9,583만달러	조선아세아태평양평 화위원회	금강산지구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선에 의한 관광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북측과 금강산 지역의 종합개발(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8년 10월 29일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라 현대의 금강산 사업은 북한과의 합영방식에 의한 관광선 위주의 관광사업에서 현대만의 단독투자 형태의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즉 현대는 사업지역을 기존의 3개 지구에서 내금강 지구등을 포함한 10여개 지구로 확대하고, 사업지역내의 토지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장기간 독점 이용권 및 사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관광 및 개발(투자 및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가로 현대는 관광선 출항 이후 6년 3개월간 총 9억 4,200만달러의 관광개발사업비를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현대가 관광선에 의한 관광산업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확대·변경한 사항에 대해 1999년 1월 15일 변경승인을 하였다.

< 주요 변경 내역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범위	○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추가 -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권리내용	○ 특별한 언급 없음	○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측에게만 부여
대가지불 특혜조치	○ 4박 5일 기준 관광객 1인당 300 달러 지급	○ 2005년초까지 9억 4,200만달러 지급
투자방식	○ 특혜조치 없음	○ 관세면제,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보장, 시설물 이용권 및 양도권 보장 등
사업대상	○ 합영(합영회사 설립)	○ 단독투자
투자금액	○ 9,583만달러	○ 1억 33만달러 * 북측 투자분 인수
지 역	○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	○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2.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

현대는 금강산 지역을 종합적인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측 물자와 인원을 투입하여 금강산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첫 성과로 1999년 2월 28일에는 온정리에 휴게소, 공연장, 상품 판매소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광객들은 북한의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공연장에서는 북한 「평양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 11월에는 온천장을 개장하였고, 장전항에 4개의 선좌를 가진 부두를 완공하였다. 부두완공으로 관광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편리한 승·하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는 장전항에 해상호텔을 설치하고, 북한의 「금강산여관」을 임대, 수리하여 관광객의 장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며, 골프장, 해수욕장, 스키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추진하는 금강산지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관광 현황

금강산관광선은 1998년 11월 18일 첫 출항한 이후부터 1999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278회 운항되어 약 158,628명의 관광객이 관광을 다녀왔다. 초기에는 「금강호」와 「봉래호」를 통해 매주 4회 운항하였으나, 1999년 6월 10일부터 「풍악호」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매일 운항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21일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하여 8월 4일까지 약 45일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계속 되어 왔다.

관광코스는 기존의 3개 코스(구룡폭포 코스, 만물상 코스, 해금강 코스)에서 망양대, 상팔담, 동석골 코스가 새로 추가되었다.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1999년 10월중 4차례의 시범 관광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월별 관광객 현황

'98.11	'98.12	'99.1	'99.2	'99.3	'99.4	'99.5
2,957	7,597	9,985	11,852	14,339	11,429	16,134

'99.6	'99.8	'99.9	'99.10	'99.11	'99.12	총 계
11,847	14,770	15,498	16,923	12,817	12,480	158,628

4. 금강산관광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가. 관광객의 신변안전대책 마련

1998년 7월 6일 현대와 아·태간에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는 「아·태측은 1992.2.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1992.9.17 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따라 북측 관할구역안에 들어오는 관광객 등의 신변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관광객 등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 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사업자간의 이러한 합의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7월 9일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왔다.

금강산 관광객 등에 대한 신변안전은 「통행협정」 등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는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여 우선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변안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6월 20일 북측이 우리 관광객의 발언을 문제삼아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관광객 억류조치가 합의사항 위반임을 강력히 항의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가운데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신변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북측이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현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999년 6월 말부터 한 달간에 걸친 협상 끝에 1999년 7월 30일자로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은 아래의 5가지 형태로 보장되게 되었다.

- ① 현대-아·태간 관광계약서(억류금지)
- ②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 ③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 ④ 「관광세칙」(합의위반 행동시 위반금 부과)
- ⑤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당일추방, 협의처리)

이러한 합의가 마련됨으로써, 북측에서 제기하는 우리 관광객의 합의 위반 행동은 「관광세칙」에 따라 위반금으로 처리하고, 이른바 ‘문제 발언’의 경우는 관광중지 및 추방(관광선으로 귀환)으로 조치하게 되었다. 또한 형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측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북측이 일방적 조치에 의해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간의 협상과는 별개로 7월 1일 북경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정부는 향후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999년 9월 21일 정부내 협의기구인 「북한방문자 신변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방북자와 신변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려는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

□ 관광세칙

- 관광세칙은 지참금지 물품,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내용, 확인서 양식 등으로 구성
 - 지참금지 물품 : 인화물질, 고배율 카메라, 무전기 등
 - 관광시 준수사항 : 관광시설 훼손, 오물 투기, 동식물 채취 등 금지
 - 위반시 제재내용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위반사례별로 「환경보전비」(위반금) 금액 규정
- 위반금 부과절차 규정
 - 북측의 환경보호순찰원은 구별되는 별도의 의복이나 표식 착용
 - 준수사항 위반시 관광객, 현대측 관계자의 사실확인 서명(확인서 교부)
 - 경미한 사항인 경우 경고 등으로 해결

□ 신변안전보장관련 “합의서”

- 현대·북측 각 3~4명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 * 「조정위」에 변호사 참여 가능
- ‘문제발언’ 관광객은 추방(관광선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협의, 처리

나. 관광객의 안전사고 및 응급사태 대비

정부는 관광도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광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즉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관광선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탑승시키고 있으며, 금강산 지역(온정리)에도 병원을 운영(의사 1명, 병상 8개, 앰뷸런스 1대)하게 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 정박 중인 예인선을 통해 우리측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다.

제3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제1절 대북지원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제2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당위성
2. 당국 및 적십자차원의 해결 노력
3.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 상봉 추진
4.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북한이탈주민 국내 · 해외 체류 실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
4. 법 · 제도 개선

제4절 북한인권 · 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2. 북한환경문제

제1절 대북지원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돋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비료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여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가.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진경과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식량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농자재 부족, 수송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아울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은 북한의 경제 및 식량사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을 요청한 것은 1995년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1996년의 총식량수요는 764만톤으

로 이중 주식용은 487만톤, 비주식용은 277만톤인데 생산은 376만톤에 그쳐 부족분이 388만톤에 달하였다.

정부는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된 1995년초부터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였다.

1995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성록 위원장은 와타나베 전부총리 등 일본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시 북한의 식량난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5월 26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같은해 6월 중국 북경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북경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남북간 북경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1,85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당시 쌀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정부는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아동용혼합곡물(CSB) 3,409톤과 국산분유 203톤 등 3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5만달러 상당의 기상자재를 제공하였다.

1997년에는 WFP를 통해 600만달러 상당의 아동용 혼합곡물, 1,053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옥수수 5만톤과 국산분유 300톤, UNICEF를 통해 수해를 입은 탈수방지약(ORS) 제조공장 복구비용 34만달러 등 2,667만달러 상당의 식량, 의료품 등을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전문구호단체인 UN기구에 현금 및 현물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6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돋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MF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WFP를 통해 총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는 비료·종자·농약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돋기로 하고 남북당국간 및 남북적십자간 직접지원을 통해 3월 30일~6월 22일간 462억원 상당의 비료 15만5천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1999.12.31 현재)

기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년	2억3,2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 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 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 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 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 원(1\$당 1,200원 적용) <p>*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 원</p>

나. 대북 비료지원

1999년도 비료지원은 3월 30일~6월 6일간 진행된 「남북적십자간 지원」과 6월 8일~6월 22일까지 진행된 「남북당국간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간 지원은 3월 11일 한적총재의 비료지원사업 발표 및 정부 참여 요청에 따라, 당국간 지원은 6월 3일 남북당국간 중국 북경접촉에서 비료 20만톤 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월 19일 제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적십자간 비료지원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정부차원에서 비료 5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한적에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당국간 지원과 관련하여 6월 10일 제5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비료 20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과 한적의 국민모금액으로 충당키로 하고, 비료구매·수송·인도인수 등 그 실행은 남북적십자간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절차를 준용키로 한 6월 3일 북경 합의를 감안, 한적에 위임키로 결정하였다.

남북적십자간 비료지원은 1998년 3월 27일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의 합의에 따른 ‘남북적십자간 3차분 지원의 추가지원’ 형식으로, 3월 30일~6월 6일간 총 10차례의 해로수송을 통해 복합비료 5만톤과 유안비료 5천톤 등 총 5만 5천톤을 지원하였다. 비료는 우리측 여수·울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1.25만톤)·해주항(1.75만톤)·원산항(1.5만톤)·홍남항(5천톤)·청진항(5천톤)으로 전달되었다.

당국간 비료지원은 1999년 6월 3일 북경 합의에 따라 6월 8일~6월 22일까지 총 11차례의 해로수송을 통해 복합비료 4.5만톤·요소 3.2만톤·유안 1만톤·용성인비 1.3만톤 등 총 10만톤을 지원하였다. 비료는 우리측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4.1만톤)·해주항(2.4만톤)·홍남항(1만톤)·원산항(1만톤)·청진항(1.5만톤)으로 전달되었다.

당국간 비료지원은 당초 「6.3 합의」시 6월 20일까지 비료 10만톤을 지원하고 6월 21일 북경에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한 후 7월말까지 10만톤을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추가 10만톤 지원은 유보되었다.

정부가 추가 10만톤 지원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북측이 쌍방 합의를 이행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대북지원이 남북간 합의이행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남북관계 정립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 비료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 할 필요성과 함께, 대북지원을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보다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비료 15.5만톤 지원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339억 원과 한적의 국민모금액 123억 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 기반 조성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 지원 허용 등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27일 북경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 추진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합의 이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흥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제3차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옥수수 기준 5만 4천여톤)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씨가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월 16일 및 10월 27일).

1999년 3월 10일 대한적십자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 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도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1995년 11월 이후 1999년 12월 말 현재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6,184만달러(695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옥수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39만톤 상당이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 단체(1천만원 이상 지원만 포함)에 이른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 3차 지원시 8개 시·도 및 9개 단체로 북한의 전지역에 우리 국민의 동포애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구호물자로는 중국산 옥수수와 밀가루·라면·감자 등 국내산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전달경로는 육로의 경우 신의주·만포·남양 등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해로의 경우 흥남·남포·원산·청진을 통해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황>

(1999.12.31 현재)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5.11~1997.5 (國赤경유)	496만달러 (39억6,915만원)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 적용
1997.6~1997.7 (1차지원)	850만달러 (75억7,000만원)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 적용
1997.8~1997.10 (2차지원)	890만달러 (81억원)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 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3 (2차추가지원)	17만달러 (2억8,000만원)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8.4~1998.6 (3차지원)	935만달러 (130억9,04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뷸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1998.9~1998.12 (3차추가지원)	1,133만달러 (141억6,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 톤당 24만원), 한우 501 두(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젖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 1\$당 1,250원 환율 적용
1999.1~1999.12	1,863만달러 (223억5,9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비료지원(3.30~6.5) : 4만톤 123억 3,300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점, 의약품 등 -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젖염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 1\$당 1,200원 환율 적용
계	6,184만달러 (695억원)	

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남북주민들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우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등 4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내용> —

- o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 모금행사 지원
- o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 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o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외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 o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이에 따라, 1998년도에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 129명이 구호물자 인도, 대북지원 협의 등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등의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으며,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의 방식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5개 단체가 35억여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1999년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민간대북지원 활동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 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량·적기 지원이 가능하여 계약재배 등 북한 농업개발지원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북지원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21일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건의료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할 것을 의결하고 「인도적차원의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1999.10.27, 통일부고시)을 제정하였다.

제2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당위성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고 인류의 절대다수가 자유와 번영이라는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오늘날에도 한반도에는 이념적 갈등으로 빚어진 분단과 단절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문제는 20세기 냉전의 산물로서 민족의 불행을 넘어 21세기 인류최대 비극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러한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반도의 미·소 분할 점령과 6·25를 거치면서 고착된 남북분단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가족이산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납·월북 및 탈북 등으로 남북간 가족의 이산은 계속되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남한내의 이산가족은 1세대 123만 명, 2·3세대를 포함하여 약 76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 1세대 중 6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만 해도 69만명에 이른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신뢰회복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징표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가족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헤어진 가족성원이 상호 연락을 회복하고 재결합하는 것은 가족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에는 이와 같은 가족권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며,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제4협약(전쟁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77년 12월 12일의 제1추가의정서에 의

하면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과 ‘무력충돌의 결과 이산된 가족’의 재 결합에 협조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분단 반세기를 지나면서 남북간에는 사용하는 언어나 생활양식, 사고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지리적인 분단, 사상과 이념의 대립,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 및 사회생활상의 단절을 치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이산가족은 고령화되고 수 많은 이산가족이 가족의 생사도 모르는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연령상 이산가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25 당시 20대들이 이제 70대에 이르러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시급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2. 당국 및 적십자 차원의 해결 노력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휴전회담에서이다. 동회담에서 포로의 송환문제와 함께 이산가족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제3조 제59항에서 귀향을 원하는 「실향사민」의 귀향을 허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회의가 2차례 개최되어, 1954년 3월 1일부터 매일 100명씩의 실향사민을 교환키로 합의되었다.

합의에 따라 1954년 3월 1일 유엔군측은 신고자 76명 중 최종단계에서 귀향의사를 변경한 37명과 간첩으로 확인된 2명을 제외한 37명을 북한측

에 인도하였으나, 북한측은 19명의 외국인만을 송환했으며, 이것이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실향사민 송환의 전부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954년 한국문제와 월남문제 협의를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변영태 외무장관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를 만나 실향사민 송환문제를 협의한 것을 시발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향사민 재등록을 실시해 등록자 총 7,034명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57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차 적십자 국제회의에서 납북인사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왔다.

1960년대 말 국제사회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고, 1971년 8월 12일 일천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같은해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시작한 이래 20여 년 간 70여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1985년도에 단 한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9.20~23, 각 151명)이 성사되었을 뿐이었다.(가족상봉은 우리측이 35가구, 북한측이 30가구였음)

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①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②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③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④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양측이 합의한 의제 5개항의 추진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적십자회담을 정치회담으로 몰고 가면서 ‘법률적·사회적 장애제거와 환경개선’이라는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측은 1989년 11월 제6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에 합의(고향방문 쌍방 각 300명, 총 571명)하고도 공연내용을 문제삼아 무산시켰다.

한편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8월 13~17일간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하고 8월 4~8일간 방북 신청을 접수, 총 61,355명의 방북 희망자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접수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제기하여, 1991년 12월 10~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명문화했다.

1992년 5월 5~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에서는 첫 시범 사업으로 8·15를 기해, 쌍방 각기 고령이산가족 100명씩을 포함하는 240명 규모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키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실무절차 협의과정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무산시켰다.

이어 1992년 9월 14~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완전 합의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3년 3월 19일 우리정부가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신뢰회복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인모를 아무런 조건 없이 송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당국간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대북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7년 5월 재개되었고, 이때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대북지원과는 별도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1998년 들어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이의 조속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통령 취임사 등 계기시마다 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두 번의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는 1998년 4월 11~17일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 논의를 외면하고 비료지원문제만을 논의하자고 고집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은 1999년에도 이어졌다.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북경에서 차관급 대표의 4차례에 걸친 비공개 접촉을 통해 우리측이 북한측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비료 20만톤을 지원하는 한편, 6월 2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6.3)하였다.

회담의제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 문제로 하되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비공개 접촉에서 북측은 ‘이산가족문제해결을 긍정적·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통크고, 폭넓게,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정책전환’이라고 밝혀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

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6·3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1998년 4.11 북경회담 이후 1년 2개월 만에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남북 차관급당국회담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구체적 실천방안>

구 분	세 부 내 용
이산가족상봉	• 월 100명 정도로 하여 1-2회 실시
생사 ·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 월 1회 쌍방 300명 정도로 교환 • 첫 명단교환은 금년 8월초 실시
우편물 교환	• 월 2회 실시 • 첫 우편물 교환은 금년 9월 중순 실시
상봉면회소 설치	• 금년 8월 초순 판문점에 설치 · 운영
방문단 교환	• 시범사업으로 금년 9월과 10월에 쌍방 각기 100명 정도의 고령 이산가족의 서울 · 평양 방문단 순차 교환

우리측은 동회담에서 6월 3일 남북 비공개접촉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생사 ·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우편물 교환, 상봉면회소 설치, 방문단 교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사태 등을 집중 거론하고 우리측의 사죄를 요구하는 등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회담이 재개되는 경우 이산가족교류의 제도화 · 정례화 등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3.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 상봉 추진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가 「7.7특별선언」(1988)의 후속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기본지침」(1989.6.12) 및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3,875건으로 이중 1,872가족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458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특히 1998~1999년 들어 이산가족교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9.12.31 현재까지 생사확인 834건, 서신교환 1,021건, 제3국 상봉 295건, 방북 상봉 6건이 성사되었다. 이것은 과거 연평균 대비 생사확인 3.8배, 제3국상봉 8.5배에 달하는 것이다.

1999년도 접촉신청은 6,847건으로 전년 대비 1.8배 수준이며, 생사 · 주소 확인은 1.3배인 481건, 상봉은 1.8배인 195건, 서신교환은 637건이 성사되었으며, 가족상봉 목적 방북도 5건이 성사되었다.

<이산가족교류현황>

('89.6.12~'99.12.31, 단위 : 건)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접촉신청	1	62	275	267	743	651	311	231	761	3,726	6,847	13,875
생사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1,872
서신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5,153
제3국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458
방북상봉	-	-	-	-	-	-	-	-	-	1	5	6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① 친척 · 친지 등 해외동포 ② 국내 민간주선단체 ③ 언론매체 ④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접촉방법별 성사현황>

(’89.6.12 ~ ’99.12.31)

구 분	해외동포	주선단체	언론매체	기업인 및 국제행사	기 타	계
생사확인	1,346	282	106	31	107	1,872
비 율	71.9%	15.1%	5.7%	1.6%	5.7%	100.0%
상 봉	381	39	22	15	1	458
비 율	83.2%	8.5%	4.8%	3.3%	0.2%	100.0%

교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가 대부분이었으나 한 ·
 중 수교 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중개지역별 성사현황>

(’89.6.12 ~ ’99.12.31)

구 분	중 국	미 국	일 본	캐나다	기 타	계
생사확인	1,246	324	95	40	167	1,872
비 율	66.6%	17.3%	5.1%	2.1%	8.9%	100.0%
상 봉	439	0	16	0	3	458
비 율	95.9%	0.0%	3.4%	0.0%	0.7%	100.0%

신청인을 원적지별로 구분해 보면 함경도가 703건(37.6%)으로 가장 많
 으며, 남한에서 출생한 이산가족도 354명이 있다.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현황>

('89.6.12~'99.12.31)

구 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평 양	경기·강원도	남 한	계
건 수	703	432	206	49	128	354	1,872
비 율	37.6%	23.0%	11.0%	2.6%	6.8%	19.0%	100.0%

한편 신청인의 현 거주지별 현황은 서울이 1,059건(5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 인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산가족 교류자 중 대다수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인의 현 거주지별 성사현황>

('89.6.12~'99.12.31)

구 分	서 울	경 기	인 천	부 산	강 원	기 타	계
건 수	1,059	368	89	87	66	203	1,872
비 율	56.6%	19.7%	4.8%	4.6%	3.5%	10.8%	100%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류당사자들의 신변안전위협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외 연고자가 없는 이산가족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신교환과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을 공식 승인하였다.

<교류주선자 현황>

(1999.12.31 현재)

명 칭	대 표 자	명 칭	대 표 자
경평통상	김유진	계명프로덕션	류재복
국군포로가족협의회	허태석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남북한마음만남주선회	장영일	대지통상	송치달
동북방선교협의회	이경남	두레국제무역	김성락
만몽실업	윤주경	민주일보사	유산선
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	전 암	연길이산가족소개소	김영엽
예문기획	김훈기	우리민족서로만나기모임	송낙환
이산가족상봉추진회	이경남	이산가족상봉회	진성구
천지항공	유재승	코리아랜드(주)	강영수
한겨레상봉추진회	김학상	한민족복지재단	전제현
한민족상조협의회	김귀덕	한민족상봉회	문광만
한민족평화운동본부	현홍균	한중문화교류협의회	이용현
현대상사	김영학	효도회	장승학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김윤휘	개 인	최병우

1999년 12월 말 현재 20여 단체가 이산가족 교류주선자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류주선활동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8년 5월 2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22개 이산가족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해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동 협의회는 총회(회장: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문위원회, 남북 협력홍보위 · 교류후원위 · 학술연구위 등 3개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의견 자율조정 및 대정부 건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시 상봉 및 고향방문 대상자 선정 등 민 ·

관 역할분담을 통한 교류지원,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교류 추진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 교류주선 질서 형성을 위해 교류주선단체·개인 및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교류주선자 승인시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각 지역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교류절차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설명과 교류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재북가족의 생사확인을 하거나 제3국 상봉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사확인의 경우는 40만원, 상봉의 경우는 8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되, 생활보호대상자·국군포로 가족 등 ‘특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류주선단체(개인) 등 교류촉진 기여자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3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협의에 의한 우편물 교환소와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가족상봉 및 자유왕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가. 이산가족교류 절차 간소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생사확인·상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촉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재북가족과 접촉한

경우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음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북한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방북 대상인 60세 이상의 이산가족 및 1953년 7월 27일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실향민, 고령 이산가족 방북 보조자, 재북가족 문병·문상 등 긴급 가사사유자는 방북기간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서류(초청장)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1999년 6월 1일부터 북한주민접촉시 필요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인터넷서비스 개통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였다.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조달청 입찰절차를 거쳐 전담사업자를 선정하여 1998년 9월 5일부터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였다. 같은해 12월 18일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장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1999년 6월 18일에는 인터넷서비스를 개통(<http://reunion.unikorea.go.kr>) 하였다.

이로써 통일부에는 이산가족 관리, 이북5도위원회에는 도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각각 구축함으로써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대한적십자사를 연결한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민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문자,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보유정보에 대한 외부해킹 및 불법 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메뉴구성>

이 산 가 족 정 보 통 합 센 터 →	안 내	센터이용/유관기관/추천사이트
	새소식	새정책·제도소개/이산가족교류동향/ 행사소개
	그리운가족찾기	신청서작성/등록사항변경/가족찾기의뢰
	교류절차	이산가족교류절차/민원접수창구/ 편지·사연소개
	보고픈고향	고향변천사/고향방문/고향정담나누기
	정책·법률 자료	정책추진방향/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 국민의정부대북정책/남북한관련법
	열린마당	사용자 의견/정책토론/법률상담

또한 유관기관에서 보관중인 기존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을 추진하여 이산가족찾기 자료 14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현행화 등을 통해 상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 유지하고 있다. 수록된 내용은 월남 실향민을 비롯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들의 신상자료와 이산시기 등 가족찾기에 도움되는 자료 및 재북가족 현황 등이 중심이다.

앞으로 방송사, 주선단체 등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북한가족의 남한 가족찾기 사연도 취합하여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체 이산가족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 이산가족 민원창구 관리 등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 264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 7월 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4개 시·도에, 1994년 8월 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2개 시·군·구 협의회에 그리고 1994년 9월 1일부터는 이북5도위원회 및 15개 시·도 사무소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방문 및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절차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교류 추진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관련 민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서 및 이산가족찾기신청서 접수 총괄업무를 1999년 9월 1일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위탁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이산가족 심인(尋人)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북한이탈주민 국내·해외 체류 실태

가. 국내입국 현황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외부세계의 다양한 정보가 북한사회에 유입되고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주민들에 대한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이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은 식량·의약품 등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을 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내에 은신·체류하면서 현지정착이나 국내로 입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1,09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경로·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입국 추세를 보면 1993년까지는 연간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를 기점으로 연간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도에는 처음으로 100명을 초과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대폭 증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해외로 탈북하는 북한주민의 절대규모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동남아 지역 등으로 입국경로가 다양화 되고 또한 먼저 입국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도움 등을 받아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입국 현황(1999.12.31 현재)>

구분	'89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총입국자	사망	이민	국내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1	149	1,095	182	34	879

1999년도에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남·녀간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절반 이상(64%)인 반면에 여성도 36%를 차지하고 있어 남자가 다수이던 예년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부·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입국자(27가족 68명)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추세인 20~30대가 다수(60%)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들 대부분은 체제불만 등이 주된 탈북동기였다고 밝히고 있다.

출신지역은 함경도(60%), 평안도(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접경 지역으로의 탈북이 용이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출신계층은 노동자와 주부 등 무직자가 다수(57%)를 차지한다.

< 1999년도 국내입국 현황 >

성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남	10	1	7	5	3	7	2	14	8	11	14	8	90(60.4%)
여	9	0	4	2	5	1	6	4	3	7	11	7	59(39.6%)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총 계
인원	13	12	46	43	16	8	11	149
비율	8.7%	8%	30.9%	28.9%	10.7%	5.4%	7.4%	100%

출신지	강원	경기	황해	평양	평안	자강	양강	함경	총 계
인원	4	0	10	18	21	1	6	89	149
비율	2.7%	0	9.8%	12%	14%	0.7%	4%	60%	100%

직업	정무 · 지도원	한의사	방송계	교원	군인	예술계	체육계	기술계	노동자	학생	무직	총 계
인원	16	1	2	4	6	2	1	13	53	19	32	149
비율	10.7%	0.7%	1.4%	2.8 %	4%	1.4%	0.7%	8.7%	35.5 %	12.8 %	21.5 %	100%

최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양상을 보면 신분의 다양화, 가족 동반 입국자의 증가, 입국경로·방법의 다양화, 개인사유 탈북동기의 증가 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탈북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내거주 현황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는 전체 입국자 1,095명중 사망자 182명, 이민자 34명을 제외한 총 879명이 거주하고 있다.

각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52%, 경기·인천 26% 등 수도권 지역에 3/4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외 부산·경남 5.2%, 기타지역은 시·도 별로 약 10명 내외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직업별 분포는 연구원 등 전문직이 3%,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가 32.1%, 상업 등 자영업자가 12.3%, 학생이 9%, 주부·고령자 등을 포함한 무직자가 38%, 정착지원시설 교육생이 5.5%로 파악되고 있다.

생활정도면에서는 1993년 이전 입국자의 경우는 대부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나, 1994~1998년도에 입국·사회편입한 자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대폭 축소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취업부진 영향 등으로 약 절반 정도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적응·생활하고 있으나, 최근 단독 국내입국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외로움, 남북간 체제·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 해외체류 실태

현재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이탈주민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째는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월경자, 두번째는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세번째는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조선족이 집단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지위는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일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에 불과한바,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보호·지원을 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중대사관 및 한·중 외교부간 각종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의 보호·지원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UN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가. 기본방향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②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화하고, ③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며, ④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나.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대분된다.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외교통상부 등에서 담당하는데,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은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어 초기 자립지원은 통일부에서 전담을 하는데,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지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으며,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보호 및 정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기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동 협의회 아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동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유관부처간 상호협조와 사전 의견조율을 강화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

가.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지침에 의거,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의 수에 따라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각 급수별 평형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회편입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해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착지원기준>

(2000년도, 월최저임금액: 361,600원)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정 착 기 본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5인 이상) :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 ○ 2급(4인) : 월최저임금액의 140배 상당액 ○ 3급(3인) : 월최저임금액의 120배 상당액 ○ 4급(2인) :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 5급(1인) : 월최저임금액의 80배 상당액 										
착 금 가 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중 18세이하 또는 55세이상 이상인 경우(2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1인마다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 세대구성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중증 신체장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이상 10배, 1년이상 20배 상당액 ○ 자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에 지원항목 2개이상이 중복되거나 세대구성원과 중복될 경우에도 40배 이내에서 지급 									
주 거 지 원	<table border="0"> <tr> <td>임 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인 이상) : 21~25평 ○ 2급(5인) : 19평 ○ 3급(4인) : 17평 ○ 4급(3인) : 15평 ○ 5급(1-2인) : 13평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지역은 급 수별 “가”지역의 각각 40%, 70%를 가액 지급(지방거주 가산금) </td></tr> <tr> <td>무 상</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평이하: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중증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 </td></tr> </table>	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인 이상) : 21~25평 ○ 2급(5인) : 19평 ○ 3급(4인) : 17평 ○ 4급(3인) : 15평 ○ 5급(1-2인) : 13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지역은 급 수별 “가”지역의 각각 40%, 70%를 가액 지급(지방거주 가산금) 	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평이하: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중증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 				
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인 이상) : 21~25평 ○ 2급(5인) : 19평 ○ 3급(4인) : 17평 ○ 4급(3인) : 15평 ○ 5급(1-2인) : 13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다”지역은 급 수별 “가”지역의 각각 40%, 70%를 가액 지급(지방거주 가산금) 									
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평이하: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중증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 									
보 로 금	<table border="0"> <tr> <td>정보</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5천만원 이하 </td><td></td></tr> <tr> <td>장 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함, 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td></tr> <tr> <td>재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상당액 </td><td></td></tr> </table>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5천만원 이하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함, 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상당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5천만원 이하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함, 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상당액 										
학 자 금 보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50% 지급 ○ 국립대 : 면제 										

나.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부터 국내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편입 이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 부지면적 18,147평에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을 착공, 약 1년 반만인 1999년 7월 8일 동 시설을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명명하고 준공·개원하게 되었다.

<주요 시설 현황>

시설명	연건평	시 설 내 역
교육관	약 1,235평	○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으로 활용
생활관	약 701평	○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으로 활용
봉사관	약 241평	○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으로 활용
경비, 면회실	약 3평	○ 경비실, 면회실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기관에서 초기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서 입소·생활하면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지도 등의 다양한 단계별 정착지원교육을 받게된다.

<주요 교육 내용>

단계	주요 교육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응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정서적 안정제고, 자아성찰 및 자아실현 의지 제고 -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윤리관 형성 및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정착에 대한 자신감 제고 -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부문의 기본구조 및 작동 원리 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안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언어, 신문방송 이해, 생활법률, 생활경제, 생활예절, 생활 의학, 적성과 진로, 이성과 결혼, 자녀교육 등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현장의 적응체험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민의 생활·영농현장 등 체험교육 및 자동차 운전면허, 컴퓨터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교육

먼저 교육생이 최초로 하나원에 입소하면 각 개인별로 전담관을 배정하여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준다. 또한 하나원은 이들 교육생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약 3개월 과정의 다양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서적·심리적 불안정 상태의 해소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입국 전 제3국 등지에서의 은신·도피생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입국 후에도 본인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정서·심리안정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인 면담 및 인성·적성 검사 등을 통한 심리상태의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둘째,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이 초기 사회적응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남한사회 전 분야의 이해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필요하고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이다. 교육생들이 이론위주의 주입식 강의에 거부감을 보이는 등 교육효과가 저조함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사례중심 현장체험 및 교육생들의 흥미·관심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원 교육중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전산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 개인의 경력·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의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하여, 우리 사회를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바,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2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각종 사회적응교육 등을 마친 후 사회에 편입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현재 총 3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다. 사회편입 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되면서 겪는 어려움중 가장 큰 문제는 생업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희망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한 후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참여율 제고 및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중 교통비·식비·가계보조수당 등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종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취업알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공납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학교에 편·입학한 자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사립대학은 해당학교에 50% 보조)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적극 주선해 주고 있다. 사회에 배출된 후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질병치료시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적극 주선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후원회를 통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년에는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외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생활 상담을 강화하였는데, 이 센터에서는 국내 취업알선, 애로사항 해결, 법·세무 생활상담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안내·지원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생활에 익숙치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조기에 자립·정착할 수 음식점 개업 등을 희망하는 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자금 융자제도를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동 지원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융자 받아 1999년 한해 동안 창업을 한 이탈주민은 총 10명에 이른다.

4. 법 · 제도 개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1994~1998년 입국, 우리 사회에 편입한 이탈주민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월 30만원 내외의 특별생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9년 12월 28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을 통해 법 ·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1998년 초기정착금의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 및 미취업자의 증가로 인해 상당수의 이탈주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1999년 12월 28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의 실시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한 날로부터 2년간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취업을 활성화하였다.

둘째 노령연금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법은 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에서만 특례노령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4월 1일 이후에 국내입국

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도 특례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동 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노령·병약자 등 자립·자활능력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이다. 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지원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동 후원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 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있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관리와 안정된 정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착지원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가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인바, 앞으로 이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이 요청된다.

제4절 북한인권 · 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되는 천부적인 권리’로 인권을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개인을 단지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헌법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고 규정하여 집단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유추해석, 형별조문의 추상성 등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가 무시되고 있다.

또한 유일사상 체계로 인해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도 통제하고 있고, 형식적인 투표와 야당 부재 현상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2월 귀순한 황장엽씨에 따르면, 북한은 “각 단위마다 설치된 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인 ‘법무생활지도위원회’(1982년 12월 설치)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주민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지도층 인사까지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계급성과 집단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무시하는 한편 인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법보다 당방침의 우위, 공개처형 관행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이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 그 실태 파악이 곤란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귀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1999년 1월 31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1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여만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 역	위 치
함 북	회령군(5만명), 화성군(2만명), 청진시(1만명)
함 남	요덕군(5만명), 단천시(1만명), 덕성군(1만명)
평 남	북창군(5천명), 개천시(1만5천명)
평 북	천마군(1만5천명)
자 강	동신군(1만7천명)

한편 1999년 4월 22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는 이순옥, 강철환, 안명철 등 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은 북한 내에 총 12개의 수용소에 약 20만명에서 25만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공개한 유일한 사례로는 1995년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단 방북시 북한 당국자가 “북한전체의 죄수는 800~1,000명으로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AI 1995년 인권보고서 “Human Rights Violations behind Closed Doors”(AI INDEX : ASA 24/12/95, December 1995)에 언급되어 있다.

한편 거주·이전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의 유민화 심화 등으로 통제가 다소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1998년 9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75조를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6월 10일 통일부에 「북한인권·환경팀」을 신설하여 관련업무의 전문화·체계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설립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와 협조

하여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배포해 오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 및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종합·정리하여 1999년 7월에는 「북한인권보고서 편람」을 발간하였다. 한편 1999년 3월 25일 UN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교부장관 특별연설을 통해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여 북한당국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유력 민간단체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하는 민간단체로는 「북한 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시민연합」(약칭 북한인권시민연합), 그리고 1999년 12월 10일 창립한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3개가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UN인권위에 참가하거나 관련 NGO와의 정보자료 공유 등 교류협력을 하는데 지원하였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199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화·삼성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 NGO와의 연대형성을 도모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였다. 그리고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를 발간하여 미국 상하원의원 535명에게 배포한 바 있다.

오늘날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1999년 한해 동안 국제 인권기구 및 국제인권 NGO 등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명	발표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l) 「98년도 세계인권 상황 연례보고서」	'99.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천명의 주민이 기아로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성도와 경제적 생산능력에 따라 식량 배급 ○ 정부의 통제로 인권관련 정보수집 제약, 주민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실정 ○ 수천명의 정치범 수감, 수건의 사형집행 미확인 보고 	평가기간: '98.1.1~ 12.31 연례보고
Freedom House 「98-99 세계자유 상황 평가서」	'99.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가장 열악한 7등급 국가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통제되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적인 체포, 구금, 정치범 처형, 잣은 약식 처형 등이 자행됨. 	연례보고
Freedom House 「20세기 정치변화 고찰 보고서」	'99.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20세기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국가 (5개국)의 하나 	20세기 결산
Freedom House 「20세기 최종 인권보고서」	'99.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수준이 가장 열악한 7등급 '최악의 국가' 	"
Human Rights Watch(美) 「세계인권 보고서 2000」	'99.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와 같이 인권기구 활동을 불허 	"
미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	'99.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재국가이며 집회·결사 등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 ○ 공개처형 등 자의적 처형과 정치범에 대한 자의적 구속 빈번 	연례보고
미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9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종교의 자유 보장실태는 아랍권 국가들과 함께 매우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이익에 기여(외국원조 매개자) 하는 경우 외에 조직적 종교활동 불가 	연례보고 (제1회)
英The Observer紙 「세계인권지수」	'99.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인권침해점수 21점으로 세계 7번째 인권침해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HDI 가중치에 의한 가중인권지수로는 인권침해 서열이 유고에 이어 세계 2위 ○ 사법제도를 벗어난 사형·구금·재판 등 인권침해가 심각 	연례보고 (제2회)

2. 북한환경문제

오늘날 북한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환경협력을 통한 북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북한 환경문제가 환경의식 부재와 경제난에 따른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폐광·해안간척·공장지대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식량증산 목적의 ‘쐐기밭’ 개간과 연료확보 목적의 남벌로 인한 산림파괴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1997년 1월 대만으로부터 2년 내 6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향후 14만 배럴을 추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우리 정부와 주변국의 저지로 무산된 바도 있다.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북한은 1999년 8월 11일 임진강유역 공동수해방지를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부(8.17) 하는 등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간 직접적인 환경협력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있다.

다만, 세계자연보존연맹·유네스코·유엔환경회의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제3국에서 개최하는 환경회의에서 남북한 환경 전문가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다.

1999년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 다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주목된다. 우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산림복구 지원과 금강산 솔잎흑파리 방제 지원 등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환경협력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이다.

산림복구지원은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체를 통해 1999년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9천여 만원 상당의 산림 기자재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지원 품목은 소나무 종자·잣나무 묘목·조림용 가위·비닐·비료·휴대용 분무기·윤척·컴페스·줄자 등이다. 또한 1999년 9월 22일 북경에서 「남북임업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서 우리측은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지원물자 수송을 요청하였으며, 북한의 「산림보호연구소」 관계자들은 3년 내 38만 정부의 산림을 녹화할 계획이라며 우리측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금강산 솔잎흑파리방제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가 금강산 지역의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해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와 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에 금강산 피해 지역 실태조사(4.9~12), 약제주입 등 방제기술 교육(6.9~14), 방제효과조사(10.14~17) 등을 위해 「한국수목보호연구회」 관계자 13명이 3회에 걸쳐 방북하였으며 살충제 등 3천여 만원 상당의 관련 기자재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기술진이 북한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직접 방제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의의가 크며, 방제효과 조사에서 85% 이상의 살충률을 확인하는 등 남북환경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9년 10월 27일 「민간차원대북지원에관한처리규정」(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자연재해예방 차원의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정부차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제4장 남북대화의 추진

제1절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

1. 개최 배경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북한측도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남북고위급정치회담’ ‘을 제의하는 등 당국간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다.

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측의 진의를 탐색하기 위해 1999년 4월 북한측에 당국간 비공개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당국간 차관급 비공개접촉이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쌍방은 이 비공개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가. 제1일 회의

남북 쌍방이 6월 3일 비공개접촉에서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6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우리측은 6월 1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회담을 6월 21일 오전 10시 북경 시내 「 Kempinski Hotel 」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의 수정제의가 없었으므로, 우리측은 6월 20일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하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북경에 도착한 후 북경주재 통일연구관과 북경주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간 전화연락을 통해 도착상황을 알리고 6월 21일 회담시 북한측 대표단에 대한 안내절차 등에 대해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월 21일 오전 전화연락을 통해 당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한 회담을 오후 3시로 연기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북한측 대표단의 명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 임하고 있는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북한측의 회담 시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일 오후 북한측은 다시 우리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측이 6월 20일까지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한 10만톤의 비료중 2만 2천톤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이 잔여분이 도착될 때까지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6월 20일까지 비료 10만톤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했으며 폭우로 인해 비료 도착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이미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바 있음을 지적하고, 6월 21일 저녁 9시에 2만 2천톤을 실은 배가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6월 22일

아침 북한측 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측이 비료 도착 지연을 빌미로 회담을 연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1999년 6월 22일 오전 10시 중국 북경 「 Kempinski Hotel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제1일 회의는 쌍방 기조발언, 의견 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일부 서영교 국장과 조명균 심의관이 대표로 참가하였고, 북한측은 박영수 내각직속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여 최성익 내각직속 과장과 권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가시적인 조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우선 가동시키고, 이와 함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남북간의 당면문제를 협의하여 그 해결방도를 마련하는 대화 기구로 유지하면서 점차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앞으로는 판문점 등 한반도내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이 당초 합의한 의제와는 배치되게 기조발언문 전체를 서해교전사태(6.15)에 집중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토의를 완전히 외면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문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우선 가동시키자고 촉구하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에 따라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자 우리측은 당일(6. 22) 오후에 쌍방 수석대표접촉을 갖거나 6월 23일 오전에 제2일 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우리측이 먼저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연구한 후 다시 만나자면서 제1일 회의를 종료하였다.

나. 제2일 회의

제2일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일 회의에 이어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관련, 더욱 세부적인 내용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당일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개최하여 하루속히 이산가족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자고 촉구하는 한편, 서해교전사태의 발생 경위와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이 문제 해결이 회담 진전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서해사건 당시 우리측 고위당국자나 정치인들이 참가 장병들을 격려한 것을 문제삼는 등 이 사건만을 집중 거론하면서 우리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회담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결국 쌍방은 비공개접촉을 통해 합의한 의제 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2일 회의를 마쳤으며, 제2차 회담을 7월 1일 오후 3시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가. 전체회의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1999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으로 진행되었다.

7월 1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서해사건에 대해서는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6.3 비공개접촉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제1차 회담시 우리측이 내놓았던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들로 제1차 회담에서 제시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에 대한 북한측의 의견을 요구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을 갔던 민영미씨가 북한측에 억류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남북왕래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긴급 협의 의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문제는 북한측 아·태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협의할 문제로서 당국간 회담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에 대해 잔여비료 제공 보장을 요구하면서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이른바 「전향적인 안」이라며 ① 우리측이 「서해해상에서의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 ② 잔여비료 수송계획을 북측에 알리며, 그 첫배를 띄우는 것과 동시에 기본문제 토의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주장하는 비료전달 문제와 관련, 6.3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비료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측도 6.3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이산가족 문제 토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북한측에 제공키로 했던 20만톤중 7월말까지 전달 예정인 10만톤의 수송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나, 이것이 약속한 기일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쌍방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측은 전체회의를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수석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쌍방은 곧바로 수석대표접촉에 들어갔다.

나. 제1차 수석대표접촉

대표단 전체회의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제1차 수석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돌연 「새로 발생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월간조선」 1999년 7월호에 게재된

‘황장엽의 전화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성명을 낭독하였다. 북한측은 이 성명을 통해, 황장엽씨가 「월간조선」을 통해 북한체제(김정일)를 모독한 것은 우리 정부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측의 ‘책임적인 대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우리 체제는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누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차기회담의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림으로써 수석대표 접촉은 14분만에 끝나고 말았으며 다음 회담이나 접촉 일자도 합의되지 못했다.

다. 제2차 수석대표접촉

우리측은 7월 1일 저녁 북한측에 전화를 걸어 회담 속개 여부를 7월 2일 정오 이내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약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이 없는 한 우리측 대표단은 서울로 철수할 것이며, 만일 북한측이 회답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측은 일단 서울에 가서 연락을 기다릴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 대표단 철수 통보에 대하여 북한측은 7월 2일 오전중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측은 당일 오후 2시 20분 북한측에 서울로 철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북한측에 대표단 철수를 공식 통보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우리측 대표단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월 2일 저녁, 북한측은 우리측에 7월 3일 오전 중에 수석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2차 수석대표접촉이 7월 3일 개최되었다. 제2차 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6.3 비공개접촉시 합의내용과 북한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통크게,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측의 구체적 방안 제시를 거듭 요구하였다. 또한 잔여 비료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올 경우 비료수송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3 비공개접촉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측이 비료수송 계획을 알리고 첫배를 띄우면 이산가족문제 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서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사죄 및 재발 방지를 또 다시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차기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 단장은 우리측 제안을 접수조차 못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쌍방은 차기회담 개최일자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종료하였다.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진행

1. 제4차 4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4자회담은 199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담에 앞서 1월 18일 진행된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제4차 4자회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즉, ① 첫째날은 전체회의 개최 ② 둘째날 및 셋째날은 오전에 긴장완화분과위와 오후에 평화체제분과위를 각각 번갈아 개최 ③ 마지막 날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 논의결과를 청취하고 회담을 종결하였다.

제4차 4자회담에서 남·북·미·중 4자는 분과위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제3차 회담시 2개 분과위 구성·운영에 합의한 데 이어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짓고 향후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기회담을 4월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음은 각측 「제4차 4자회담 대표단」의 명단이다.

제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2개 분과위를 통해 실질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분과위 운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언급하였다. 특히, 실질문제 논의에 있어서 쉬운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긴장조성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과 그 수단의 제거가 근본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즉,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문제들이 반드시 논의·해결되어야 하며, 민족 내부문제인 남북사이의 문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 가장 실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측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 논의를 통해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분과위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원칙과 상호간 압력행사 자체 및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중 시급하고 실천이 용이한 조치로 ①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 주요 군사훈련의 통보 및 제한된 범위의 군사훈련 참관 허용 ③ 군인사 상호 교류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포함한 긴장완화의 방법문제 등을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측은 점진적 긴장완화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각측은 어떠한 의제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은 유관 각측간 다차원·다형식적 신뢰구축조치 등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는 우리측은 우선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평화체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평화협정의 내용 이외에 한반도 특수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평화체제의 형식은 당사자문제 등 입장 차이가 큰 어려운 문제이므로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토의 의제로 미·북간 평화협정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찬성하며, 각측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의제 선정기준은 4자의 콘센서스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전진해 나간다는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평화협정의 내용에 유관 각측간의 대결 종식 및 관계개선과 자주평화 실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제5차 4자회담

제5차 4자회담은 1999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담에 앞서 4월 23일 진행된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본회담은 지난 제4차 회담과 비슷하게, ① 첫째날은 전체회의 개최 ② 둘째날 및 셋째날은 오전에 긴장 완화분과위와 오후에 평화체제분과위를 각각 번갈아 개최 ③ 마지막날(4.27)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 논의결과를 청취하였다.

제5차 4자회담은 비록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는 가운데 차기회담 일자만을 정한 채 종료되었지만 4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자가 본질문제 협의에 착수함으로써 4자회담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각측 「제5차 4자회담 대표단」 명단이다.

제5차회담에서 우리측은 전체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질문제 논의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긴장완화분야에서 한두가지 시범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비록 작지만 가시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분과위 의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우리측과 미·중측이 주장하는 실질문제 논의를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긴장 완화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분과위에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우선 논의하자는 우리측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가운데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지속성(momentum)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측은 그동안 회담과정에서 수행한 4자회담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분과위 의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중국측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4차회담시 제의한 3가지 군사분야 신뢰구축 조치를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측도 구체적이고 협의가 쉬운 신뢰구축 조치를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하여 우리측과 입장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긴장완화분과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종식되기 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를 논의할 수 없으며 “외국군대가 조국 강토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운운은 민족적 자존심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 북한측은 평화협정의 형식이 더욱 중요하므로, 당사자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협정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이 장황하게 설명한 유엔사의 불법성,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측은 평화협정은 남북이 직접적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위스 정부가 제안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신뢰구축 경험을 4차회담 참가국들이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스위스 정부가 회담 기간중 수차례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북한측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미국측은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으로서 스위스측이 OSCE 경험을 동북아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의 구체방안에 대해 좀더 문의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측은 ‘각측의 일치된 주장을 존중하겠다’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였다.

3. 제6차 4차회담

제6차 4차회담은 1999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회담일정은 지난 4·5차 회담일정과 유사하였다. 이 회담에서 4국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한 긴장완화조치들을 검토·논의하였으며,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평화체제의 윤곽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분과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차기회담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다음은 각측 「제6차 4차회담 대표단」 명단이다.

제6차 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분과위원회 협의를 위주로 실질문제 토의에 주력하였으며, 긴장완화 분야에서 가시적 진전 도출과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4차회담을 미·북 양자구도화 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화하자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차기회담 일자 협의를 거부하였다.

미국측은 대체로 우리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가운데 4차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가면서, 긴장완화 분야에서 본회담 사이의 활동(intersessional activity)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의 실질적 문제 협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서해교전사태 등 최근 한반도 긴장정세를 예시하면서 조속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체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제5차 4자회담시 이미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협의·이행을 촉구하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의 접근방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긴장완화의 실질적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판문점 장성급회담 활성화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추가로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남북화해를 위한 가장 초보적 조치이며 미국의 대북 신뢰조성 의지의 척도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리측과 유사한 내용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국측은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이며 여타측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측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행동규범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여건과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평화체제의 형식으로 남북이 주당사자로 되고 미·중은 중인자격으로 서명하는 「남북평화합의서」와 미·중이 합의서의 효력을 보장하는 내용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평화체제의 내용에는 전쟁상태의 종식 선언 및 무력불사용 등 일반적 내용과 일정수준의 신뢰구축과 군축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미·북이 정전협정의 기본 당사자였던 만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미·북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각측이 제시한 의제를 종합하여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나 하나 검토하자고 제의하였다.

미국측은 우리측이 내놓은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제의에 동조하면서 평화체제와 관련한 합의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측 입장은 「조선반도 평화협정 초안」 형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 협정의 내용으로 전쟁상태의 종식 선언, 불가침·내정 불간섭,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조치 등 일반적인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3절 임진강 유역 남북공동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간 회담 제의

1. 제의 배경

1999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쏟아진 집중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남북한에는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홍수 피해를 크게 입었다. 우리측 지역은 경기도 북부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에서 각 800mm 이상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이재민 25,000여명과 사망자 10여명이 발생하였고 농경지도 23,000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측 지역도 8월 2일과 5일 「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개성시, 황해도 등지에 200~700mm의 비가 내려 수십만ha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는 가 하면 수백km의 도로와 철도가 유실되고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났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임진강 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한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 접촉을 제의하였다.

2. 북측 반응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측은 8월 13일 「민족민주전선」 방송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비현실적인 것이고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임진강 유역의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짐작해 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일환’이며,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진강 유역에 공동 수해 대책을 세우자고 한 대북제의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8월 17일에는 「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이 임진강 치수 대책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남북 공동 대책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것은 피해 지역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요술에 불과하며, 임진강 유역의 수해는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아 오는 것도 아니며, 북남 공동 대책을 세우지 않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3. 향후 추진 방향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여 자연 재해를 막는다면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를 위한 남북간 협력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제5장 대북경수로사업의 지속 추진

제1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경과
2.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제2절 부지준비공사 추진 및 본공사 착공 준비

1. 부지준비공사 추진
2. 본공사 착공 준비

제3절 재원조달

1. KEDO의 재원분담결의 채택
2.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 체결
3.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융자계약 체결
4. 경수로사업비 국내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1절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경과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대북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4월부터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개시하였다.

먼저 경수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KEDO 인원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문제와 통행·통신 문제부터 협상을 추진하여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 1월에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북한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원칙을 정하는 「부지 의정서」와 「서비스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에 대비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까지 경수로 착공에 필수적인 6개 의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1998년부터는 기술적 측면의 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은 1997년 2차례, 1998년 1차례 등 총 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훈련 의정서」 협상이 2차례 개최되었다. KEDO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질보장 의정서」와 「훈련 의정서」를 우선 체결하고, 앞으로 경수로사업이 진전되는데 따라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에 필요한 여타 의정서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1999년말까지 이미 체결된 후속 의정서와 앞으로 KEDO-북한간 협상을 통해 체결해야 할 잔여 의정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비 고
특권 · 면제 및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	경수로 공급협정 제4조 6, 7항	'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3, 6항	"
통 신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5, 6항	"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 · 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5조 3항	'97.1.8 발효
서비스	북한의 노무 · 물자 · 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4, 6항	"
미지급시 조 치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6조 3항	'97.6.24 발효
품질보장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경수로 공급협정 제6조 4항	협상중
훈련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경수로 공급협정 제7조 2항	"
인도일정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3조 3항	미 협의
상환조건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2조 4항	"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 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4항	"
핵 안전 및 규제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10조 5항	"
핵사고시 책 임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 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2항	"

후속 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와 북한은 기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실무협상을 수시로 개최해 왔다.

1997년 4월부터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동년 7월 2일 북한출입, 통관, 해상수송 등 19개 분야의 세부절차에 합의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개별서비스계약(ISC) 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1998년에는 KEDO와 북한의 고위전문가 협상이 2차례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1997년 8월 부지준비공사 착공이후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로 이용, 북한 근로자 임금 수준, 북한의 KEDO은행 이용문제, KEDO 인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제반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도 2차례의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이 개최되었다.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북한 향산에서 개최된 1차협상에서 KEDO측은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될 본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객화선의 운항횟수 및 승선인원 증가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KEDO가 제출한 객화선 운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승선인원 증원문제는 공사진척도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북한측은 KEDO측이 요구한 KEDO인원의 인근 휴양지 방문, 「통신 의정서」상의 합의사항인 독자통신망 설치, 우편물 폐낭중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 진척도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기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양측은 응급환자 발생시 이용할 북한측 의료시설인 함흥병원을 1999년 5월 이전에 KEDO측이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항공기, 선박 등을 투입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차 협상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북한 향산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당초 본공사 착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반 현안들을 협의키로 하였으나, 북한측이 공사지연 책임을 KEDO측에 전가하고 북한 노동력 공급에 관해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1999년 5월 실무전문가 협상에서 문안에 합의한 바 있는 「환경면책 양해각서」는 서명되었다.

고위전문가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1999년 말까지 진행된 KEDO-북한간 실무협상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무협상 주요 현황〉

구 분	기 간	장 소	주요 협의 또는 협의사항	비 고
19개 세부 절차 협의	'97.4.9-15 '97.12.3-23 '98.8.10-27	부지 향산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출입 절차 ○ 통관 및 세관검사 절차 ○ 해상수송 절차 ○ 조선무역은행 서비스 절차 ○ 항공에 관한 양해각서 ○ 우편서비스에 관한 양해각서 ○ 북한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양해각서 등 	'97.7.2 발효
개별서비스 계약 협상	'97.7.13-18 '97.8.20-21	부지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공급 계약 ○ 하도급 계약 ○ 항공기 전세계약 ○ 인력공급 계약 ○ 의료서비스 계약 등 	
고위전문가 협상	'98.1.20-24 '98.5.5-9 '99.2.9-13 '99.9.28-10.2	향산 향산 향산 향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통행로 이용 ○ 독자통신망 구축 ○ 북한 노무인력 공급 ○ KEDO 인원 인근 휴양지 방문 등 	
PSAR(예비 안전성분석보 고서) 설명회	'98.5.26-29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울진 3,4호기 PSAR 설명 ○ 경수로의 일반사항과 주요설비에 대한 개념설명 	
환경 · 노무 관련 실무회의	'99.5.26-30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면책양해각서 · 환경보호계획 ○ 북한 노무인력 공급 · 생산성 향상 방안 	

2.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가. 품질보장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1997년중에 두차례(1차:11.4~11 향산, 2차:12.3~23 뉴욕)의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8년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핵심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종결하였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시운전 기간중의 품질보증활동의 주체, 품질보증 활동 참가인원에 대한 특권·면책, 전기출력 미달 시 보상문제 등이었다.

1999년에 들어서는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는 KEDO와 북한 모두 본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와 이에 따른 보다 시급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공사가 착공되고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이 재개되면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이 우선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훈련의정서 협상

1999년에는 경수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인력의 훈련문제를 규정하게 될 「훈련 의정서」 협상이 두차례 개최되었다. 1차 협상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북한의 향산에서 개최되었고, 2차 협상은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에서는 훈련인원 선발, 훈련종료 시기, 모의제어반 제공관련 문제, 훈련인원 보호문제 등이 협의되었으나, 훈련장소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본공사가 착수되고, 후속 의정서 협상이 재개되면 「품질보장 의정서」와 함께 우선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절 부지준비공사 추진 및 본공사 착공 준비

1. 부지준비공사 추진

가. 공사추진 경과

1997년 7월까지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은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되기까지 우선적으로 부지준비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한국 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 공사는 경수로 건설예정지역의 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시설 등 주요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1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부지준비 공사는 재원분담 협상 및 차관공여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공사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5 차례에 걸쳐 연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공사 실적

부지준비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합동시공단(현 대건설, 대우, 동아건설, 한국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 말 현재 남한측 근로자 270여명, 북한측 근로자 200여명 등 총 470여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130여 대의 장비도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발전소가 들어설 부지를 정지하는 작업 뿐 아니라 공사추진에 필요한 도로·통신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들의 편의·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공사실적을 보면, 1999년 말 현재 경수로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은 총 부지정지물량의 약 56%를 완료하였다. 부지정지공사 이외에 공사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서 부지인근 진입도로 12.4km를 개설하였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8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임시동력시설, 건설사무소 등의 공사기반시설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120실 규모의 임시숙소, 식당을 비롯하여 식당,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뿐 아니라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도 마련하였고, 위성TV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등 22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본공사 개시후 공사물량 및 공사 참여인원이 대폭적인 증가할 것에 배비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작업 및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지와 북청군 남대천에 있는 골재원을 연결하는 도로(16km) 및 공업용수관(14km) 건설과 15개동의 기능공 영구숙소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공사 개시후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완비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KEDO는 앞으로 본공사가 착수될 것에 대비하여 부지정지공사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수로공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지준비공사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지준비공사 추진 현황〉

구 분	공사기간	공사비 (만\$)	주요공사내용	비 고
당초 공사	'97.8.16 ~ '98.8.15	4,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1,027,300m³) o 임시콘테이너 설치(숙소·식당·사무실 등 42개동) o 숙소용콘테이너 설치(68개동) o 건설사무소 신축 o 임시도로 개보수(12.4km) o 통신설비, 임시동력설비, 임시용수공급시설, 중기수리고 설치, 유류저장고·주유소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 o 위성TV수신장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건설 	남북협력기금 융자금(4,500만달러)
1차 연장	'98.8.16 ~ '98.10.15	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190,000m³) o 본부지 올타리 설치 o 유류저장고 벽면보호 작업 o 임시조경용 수목 이식 o 벽돌제작(75만매) o 임시도로 유지보수 	남북협력기금 융자금 잔여금
2차 연장	'98.10.16 ~ '99.1.15	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316,000m³) o 공업용수 설비 및 골재원 진입 도로 건설(2.5km) o 기능공 숙소 기초공사(3개동 기초 및 1층 슬라브) o 벽돌제작(30만매) o 임시도로 유지보수 	한전의 공급자 신용 방식(외상 공사)

구 분	공사기간	공사비 (만\$)	주요공사내용	비 고
3차 연장	'99.1.16~'99.6.15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688,200m³) o 공업용수 설비 및 골재원 진입 도로 건설(5km) o 기능공 숙소 건설 o 중기수리고 외벽공사 o 벽돌제작(120만매) o 임시도로 유지보수 등 	"
4차 연장	'99.6.16~'99.8.15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250,000m³) o 공업용수 설비 및 골재원 진입 도로 건설(2km) o 현장식당, 콘크리트 시험실 기초 공사 o 후생관 및 편의동 기초 공사 o 임시콘테이너 증설 o 위성TV수신장치 증설 등 	"
5차 연장	'99.8.16~'99.12.15	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지정지(420,000m³) o 공업용수 설비 및 골재원 진입 도로 건설(2km) o 현장식당, 콘크리트 시험실 건설 o 기능공 숙소 건설 o 후생관 및 편의동 건설 o 오수처리시설 건설 등 o 진입도로 유지관리(19.9km) 	"

2. 본공사 착공 준비

가. KEDO-한전간 주계약 체결

경수로사업의 본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TKC : Turn Key Contract)이 우선 체결되어야 한다. 주계약은 1996년 3월 KEDO에 의해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이다.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주계약의 방대한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1999년 들어서만도 KEDO와 한전간에 7차례의 공식협상과 여러 차례에 걸친 비공식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KEDO 집행이사국간에도 미합의사항을 해결하고 주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KEDO-한전 간 제15차 협상에서도 양측은 미합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계약을 체결하고 본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합의사항에 대해 상호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KEDO와 KEDO 회원국들의 의지는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전간의 주계약이 서울에서 체결됨으로써, 2년여간 지속되어 온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KEDO와 한전간에 체결된 주계약은 총 1,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서, 계약 일반조건 38개 조항(150개 세부조항)과 2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의 주요내용

1. 의무사항

o 한 전

- 가압경수로 1,000MW급 2기 건설, 각종 생활 및 기반시설 설치 · 운영, 부지운영 및 건설방법에 대한 책임

- o KEDO
 - 부지제공,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부지내 질서유지, 통신수단 제공

- o 북 한
 - 경수로 공급협정, 의정서 등에 따른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

2. 공사기간

- o KEDO-북한간 별도 의정서(인도 및 조치일정 의정서)에 따라 확정

3. 계약금액

- o '97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40.8억불(물가변동분 보상조건)

4. 주요 계약조건

- o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의 재정적 · 법적 보호
 - KEDO는 한전 및 협력업체들을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o 분쟁 및 중재절차

- 준거 : 국제상사중재규칙
 - 중재장소 및 사용언어 : 서울, 영어

- o 교육훈련

- KEDO는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에 따라 충분한 수의 북한 훈련생을 공급

- o 보 증

- 전기출력 : 1,000MW(허용오차 : ±3%)
 - 기 간
 - 주요기자재 : 성능보증시험후 2년
 - 시 공 : 성능보증시험 완료후 2년

- o 기술지원

- 한전은 첫호기 준공후 1년동안 운전 · 보수유지를 위한 기술 지원

5. 발효시기

- o KEDO-한국수출입은행, KEDO-일본국제협력은행간 융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

주계약이 체결됨으로써 KEDO와 KEDO 회원국들의 대북 경수로사업에 대한 의지가 보다 확고하게 구체화·실천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주계약 체결 직후 경수로 본공사에 대한 남북 협력 사업을 승인하였다. 본공사가 시작되면, 부지정지공사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취수방파제·물양장 등을 건설하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 사업 관리체계 강화

주계약 협상과 병행하여 우리 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에 대비하여 경수로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본공사 착수후 1년 이내에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우리 근로자는 현재의 250명 수준에서 최대 800명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되어 있는 편의·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공 영구숙소를 건립하고, 후생관 및 편의동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대비하여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 증편, 독자통신망 구성, 우편물 폐낭중계 등 각종 의정서 상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EDO-북한간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가 대규모로 증원되는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수로 생활수첩」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경수로 부지에 상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안내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남북간의 대규모 인적·물적·기술적 교류 및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경수로사업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수로사업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남북간 신뢰와 화합이 시작되고 발전해 나가는 장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제3절 재원조달

1. KEDO의 재원분담결의 채택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수로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문제이었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6년부터 예상사업비 산정과 각국의 재원분담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원분담협상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 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협상 초기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의 재원분담협상 끝에 KEDO 집행이사국들은 각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재원분담결의」에 따른 각국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측은 실제공사비의 70%를 원화(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 억달러 상당의 3조 5,420억원)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10억달러 상당의 엔화인 1,165억엔을 기여하고, EU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ECU를 기여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이 기여하는 총액이 사업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 시 추가부담을 더안을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2.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 체결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서 한국과 일본은 KEDO와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차관공여협정」 문안을 각각 마련하여 KEDO 집행이사회 및 실무회의에서 KEDO 집행이사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1999년 4월 6일 KEDO 집행이사회에서 「차관공여협정」 문안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4월 30일 법제처에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는 등 국내절차에 착수하였다.

이후 KEDO집행이사국들간에 북한의 상환을 KEDO의 상환책임과 연계시키는 문제 등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KEDO 집행이사국간의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관공여협정」 체결에 필요한 정부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1999년 7월 2일 「차관공여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정부는 「차관공여협정」 서명 직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차관공여협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8월 12일 차관공여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으며, 이를 우리측이 KEDO에 통보함으로써 동년 8월 19일부로 한국정부-KEDO 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하게 되었다. 1999년 11월 9일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결의」를 통해 약속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인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측의 재원분담 약속은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책무로 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자국 의회의 정기회기가 6월말에 종료되고 그 이전에 「차관공여협정」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9년 5월 3일 일본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에 서명하고, 6월 30일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7월 15일 일본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발효시켰다.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관공여협정의 주요내용〉

- 한국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원을 위해 KEDO에 대하여 남북협력 기금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함.
- 차관의 총액은 KEDO의 「재원분담결의」상의 예상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실제사업비의 70%까지로 하고, 차관공여 조건은 무이자 원화대출로 함.
- KEDO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이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후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함,
- 차관의 상환은 현금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현물로도 상환할 수 있음.

3.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 체결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됨으로써, 1999년 9월 이후에는 「차관공여협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용자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용자계약」 협상이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EDO간에 진행되었다.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간에 「융자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1999년 11월초까지 3차례 개최(1차: '99.9.13~17 동경, 2차:'99.10.4~8 뉴욕, 3차:'99.11.1~2 서울)되는 등 융자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의 융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한 융자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경수로사업비 기여를 위한 우리 나라의 대외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련하게 되었다.

4. 경수로사업비 국내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1999년 11월 9일 KEDO 집행이사국간에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측의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국내재원조달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의 적기·안정적 조달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 현실적 가능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평화·안보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IMF 금융지원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요 등으로 인해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채발행도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화여부가 불확실하여 자금의 적기·안정적 조달이 곤란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채발행 이후 일정시점부터는 국채발행액보다 이자지급액이 더 커짐으

로써 결국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경수로사업비 조달방법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편, 목적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고, 부과·징수체계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즉시 사용되어져야 할 경수로사업비 조성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담배·전화·상수도 등을 통한 재원의 다각화 방안’은 재원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수로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징수저항이 예상되었다. 또한, 동일인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에 걸쳐 중복부담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있으며, 부담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도 경수로사업비 조달방법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다.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수로사업비의 평화·안보비용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전기요금납부금’은 전기사용자인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형평성있게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요금이 대규모이고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의 적기·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었다.

또한 경수로사업은 전기공급자인 한전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전력사업인 만큼 전력사업과 연계하는 재원조성방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전기요금납부금제도’는 경수로사업비 조달방안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금의 적기·안정적 조달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998년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 3일 당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9년 5월까지 5차례의 공식 당정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

여 여론조사, 언론사 논·해설위원 등 여론 주도층 대상 설명,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999년 5월 7일 제5차 당정회의에서 경수로사업비 국내재원조달을 위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5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6월 4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전기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경수로사업비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경수로사업에 대한 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함.
- 경수로사업에 대한 용자후 환수된 자금은 전기요금 안정화 재원·전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전기사용자를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
- ‘전기요금납부금’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기가 회복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 ‘전기요금납부금’제도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됨

국회에 이송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7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우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4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국내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이 지연되어 1999년말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시행이전 경과조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한 전기요금납부금제도의 시행시기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기가 회복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 본공사를 1999년중에 착공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남북협력기금법 시행이전에 소요되는 경수로사업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새로이 대두하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가 시행되어 경수로사업비가 조달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선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14일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는 국채관리기금 담당부서인 재정경제부에 국채관리기금 예탁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예탁규모는 금년도 및 내년도 경수로사업비 예상 소요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8일 국채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1,5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이 자금은 초기부지공사(PWC) 공사대금 및 본공사 선급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00년도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채관리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2,470억원을 반영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납부금’제도 시행 이전에 국채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한 것은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국내재원조달을 차질없이 함으로써 경수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채발행으로 우선 조달한 자금은 향후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방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면 국채관리기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 체계와 방향
2. 학교통일교육
3. 사회통일교육

제2절 통일홍보

1. 국내 홍보
2. 해외 홍보
3. 행정정보 공개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2. 자문기구 운영
3. 민간자문활동 지원

제4절 북한자료개방 추진

1. 북한자료 공개 확대
2.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제 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체계와 방향 정립

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 통일, 한·중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1월 5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나.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는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6대 중점추진과제로 ① 종합적·체계적 통일교육 실시기반 구축 ②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③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④ 대중매체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⑤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 강화 ⑥ 통일교육 실시 체계 정립을 선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교육기관의 2000년 통일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및 기본교재의 발간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에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성과를 반영하고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이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주요사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요원의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재로 「통일연구 참고자료」를 발간·활용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청각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 추진

인터넷의 발달로 대표되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매체를 확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 추진은 첫째, 직접교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을 확장, 둘째, 통일교육에 관한 통합 「정보자료지원센터」로서 기능 확충, 셋째, 일선 통일교육요원의 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①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 교육정보 인프라 조성 ② 통일/북한 관련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 지향 ③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자료 제공 ④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홈페이지를 개발·시험가동하고 2001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2001년 하반기부터는 명실상부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교육 정보화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통합을 위한 열린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통일교육

통일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초·중·고등 10개교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지정한 18개의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 북한관련 통일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통일교육관련 발표회 실시, 판문점 견학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통일문제연구소에 보조금 지급 등 지원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52개 대학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1999년 말 현재 1998년 보다 2개 연구소가 증설되어, 전국 82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는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여 왔다. 1999년에는 ‘2000년대 남북한의 지역간 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군산에서 열렸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과는 관동대, 고려대, 선문대, 동국대, 명지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황 〉

('99. 12 현재)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강릉대	통일문제	김건석	동의대	법정	이강웅
강원대	사회과학	홍성렬	명지대	사회과학	조병륜
건국대	민족통일	양병희	목포대	통일문제	서창호
경기대	민족문제	노태구	배재대	통일문제	김혁동
경남대	극동문제	윤대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채상식
경북대	평화문제	엄재호	부산외대	국제문제	김종현
경산대	평화전략	권기수	상명대	통일문제	조성대
경상대	통일문제	횡갑진	상지대	사회과학	공제욱
경성대	사회과학	공보경	서강대	동아	정인재
경원대	사회과학	이화숙	서경대	통일문제	전신욱
경희대	국제평화	손재식	서울대	사회과학	권태환
고려대	평화	조정남	시립대	법률행정	박용찬
관동대	동북아평화	유삼열	서원대	사회과학	신용철
국민대	사회과학	배규한	선문대	평화사상	박홍순
군산대	현대이념	고용권	성균관대	사회과학	김정우
단국대	정책과학	김성윤	성신여대	사회과학	최민자
대구대	사회과학	김연기	세종대	통일문제	김영식
대구효성카톨릭대	현대사상	이학수	숙명여대	통일문제	이창신
대전대	동북아	지길홍	순천대	사회과학	김인선
동국대	안보	강성윤	순천향대	사회과학	문제우
동신대	민족통일	최영표	숭실대	사회과학	문수언
동아대	사회과학	박동국	신라대	국제지역	이병화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아주대	사회과학	김영래	조선대	동북아문제	이창현
안동대	사회과학	김옥암	중부대	평화통일	이부훈
안양대	복지행정	송준호	중앙대	민족발전	이상만
여수대	통일문제	류명걸	진주교대	초등교육	박정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문정인	창원대	사회과학	주정연
영남대	통일문제	김태일	청주대	국제협력	윤만근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전도웅	충남대	통일문제	윤기관
우석대	한국정치	김영선	충북대	사회과학	강형기
울산대	사회과학	이은우	한국외대	사회과학	김만기
원광대	통일문제	김용욱	한남대	사회과학	이봉철
이화여대	한국여성문제	이상화	한림대	한림과학원	현승종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백낙서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송광성
인천대	평화통일	정광하	한성대	동아시아	이우관
인천교육대	통일교육	이근철	한세대	통일문제	강명희
인하대	국제관계	백광일	한신대	평화	김창락
전남대	아·태 지역	지병문	한양대	통일정책	최성철
전북대	사회과학	김영정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황오연
전주대	사회과학	박창수	호서대	통일문제	채경석
제주대	동아세아	김부천	홍익대	동서문화	전웅

〈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 개최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일자	발표주제(발표자)	참여교수
'95	11.10~11.11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 외교 (한승주, 고려대) ·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방향 (신창민, 중앙대) · 세계화시대의 북한경제와 변화전망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문제강좌 교재개발 (김성윤, 단국대) · 통일문제 교재개발 (김영수, 제주대) 	68명
'96	11.15~11.16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서진영, 고려대) ·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교류 · 협력의 전망 (이상만, 중앙대) ·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엄재호, 경북대) · 북한연구의 방법 및 현황과 문제점 (채경석, 호서대) ·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활성화방안 (민병천, 서경대) · 한반도 미래와 통일 (김덕, 전 통일부 장관) 	60명
'97	8.25~8.26 (전북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김성윤, 단국대) · 북한경제의 현실과 남북 경제협력 (이영선, 연세대) ·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최용기, 창원대) · 미 · 중의 대남북한 정책 (황오연, 호남대) ·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방향 (노태구, 경기대) · 통일한국의 영역과 위상 (김영선, 우석대) 	70명
'98	12.16 (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전략환경과 한반도 문제 (신정현, 경희대) · 북한의 대내외 정책 (심정창, 중국 북경대) ·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통일정책 (이세기, 국회의원) · 북한의 남북한 통일정책 (진용산, 중국길림성 동북아연구소장) · 서독의 대동독 화해 · 협력과 통일 (이태영, 한세대) · 미국의 동아태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백종천, 세종연구소) 	70명
'99	8.20~8.21 (군산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의 지방정부 (채경석, 호서대) ·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과 자치단체의 역할 (주정연, 창원대) · 남북 교류협력의 새패턴 (박홍순, 선문대) · 동서독, 남북예멘의 지자체 협력 사례 (김태일, 영남대) · 중국과 대만간의 지방정부 및 민간교류의 현황 (노태구, 경기대) · 서해안 지역개발과 한 · 중 · 북간의 지자체 협력 (김영선, 우석대) · 한반도 연안어업과 어장 및 양식여건 (군산시 인사) · 남북 지역단체간의 결연과 어업 협력방안 (고용권, 군산대) 	1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중 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1987년부터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실태 등을 살펴보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고, 1998년부터는 판문점과 백령도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입상공모 권장 주제	응모자	입상자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통일의 과제 • 분단 50년과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 • 남북교류 · 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안 • 범민족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49개대학 115명	7명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 교류협력과 민족 공동체 형성 •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 여건 조성 • 분단국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세계화와 통일대비교육 방안 • 주변4국과 통일문제 • 북한의 대미 · 일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 통일 · 북한관련 내용의 자유 논제 	54개대학 100명	9명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 •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전망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향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56개대학 109명	9명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발전방향 • 남북화해 · 협력의 걸림돌과 그 제거방안 •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강구방안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 •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 남북한 관계분석과 관계개선방안 	64개대학 121명 (대학원생 포함 응모)	9명 (2인공동 입상1편)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관계전망 • 남북한 신세대 의식구조 동질화 방안 • 정보화 시대의 남북간 협력방안 • 대학생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향 • 남북한의 정치 · 군사부문 신뢰구축 방안 • 남북관계 개선과 정경분리 원칙 •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방안 	49개대학 87명 (학부생만 응모)	9명 (2인공동 입상1편)

3. 사회통일교육

가. 초청 · 순회교육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사회통일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과정·통일요원과정·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장사, 중등교사, 교장·교감, 대학교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통일요원과정은 통일행정관리요원, 통일행정실무요원, 통일교육요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은 통일이전·과정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및 통합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문제 관련 지식,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분야별 통합과제 등의 내용을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2~3주이다.

이 과정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중·고교 사회·도덕·윤리과 교사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 시킴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통일요원의 인적자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간부, 통일단체간부, 대학생, 방북예정자(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 교육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 등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의지를 높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 여론 선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 교육보다는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1999년 5월 14일 부터는 승선후 선상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99년도 초청·순회교육 실적>

(1999.12.31 현재)

과정 및 반		대상	기간	계획(명)	실적(명)	비율 (%)	횟수 (실적/계획)
전문 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회반	통일교육전문위원회	3일	450	382	85	5/5
	평통자문위원회반	민주평통자문위원회	2~3일	1,040	1,160	112	10/10
	사회교육기관강사반	사회교육기관강사	3일	180	164	91	3/3
	사회교육기관장반	사회교육기관관장	3일	50	39	78	1/1
	중등교사반	중등교사	3일	1,080	1,013	94	12/12
	교장·교감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3일	405	363	90	5/5
	대학교수 연찬반	대학교수	3일	250	292	117	4/4
	관리직공무원(2~5급)		3일	270	237	88	3/3
	신임사무관		2일	20	23	115	1/1
	보안경찰직공무원		3일	90	88	98	2/2
	교정·교회직공무원		3일	180	179	99	4/4
교류 협력 과정	통일부공무원		5일	45	26	58	1/1
	정훈장교		3일	90	83	92	2/2
	정부관련기관간부		3일	150	101	67	2/2
	소계		2~5일	4,300	4,150	97	55/55
교류 협력 과정	남북교류협력반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 예정자	1~2일	2,500	3,744	150	62/52
통일 요원 과정	통일행정관리요원반	공무원(4~5급)	3주	232	170	73	6/6
	정부관련기관간부		3주	38	19	50	2/2
	통일행정실무요원반	공무원(6~7급)	2주	770	723	94	9/9
	통일교육요원반	유리·도덕·사회과 중등교사 및 교육전문직	3주	360	346	96	4/4
	통일대비교육 이수자반	통일대비교육 이수자	3일	300	172	57	2/2
소계		3일~3주	1,700	1,430	84	23/23	
특별 과정	지방자치단체반	지방자치단체반 (시장·군수·구청장)	3일	40	80	200	2/2
	사회단체간부반	노동조합간부	3일	225	328	146	6/5
		종교단체간부	2일	240	102	43	2/2
		여성단체간부	2일	90	143	159	4/2
	통일단체간부반	통일관련단체간부	2일	580	581	100	8/7
	대학생반	대학재학생	3일	800	581	73	7/7
	자원교육반	사회각계인사	1~2일	425	1,909	449	35/10
	소계		1~3일	2,400	3,724	155	64/35
합계		1일~3주	10,900	13,048	120	204/165	
순회 교육	국내	대학생 도서·오지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교사 등	1일	19,760	20,637	104	110회
		금강산 관광객	1일	(385,000)	(52,732)	(14)	144회
	해외	미국, 일본지역 등 거주교포		240	260	108	1회
	소계			20,000 (385,000)	20,897 (52,732)	104 (14)	255회
총계		1일~3주	30,900 (385,000)	33,945 (52,732)	110 (14)	459회	

나.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통일교육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민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통일홍보

1. 국내 홍보

가. 홍보책자 발간 배포

통일부는 1970년 8월 창간된 월간 「국토통일」을 시작으로 통일정책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노력해왔다.

또한 대북정책과 남북간 주요현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해교전 사태 등 주요 계기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였다.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세대별, 계층별로 특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만화 「점프」와 홍보리플릿 「뽀리생각」을 발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등 신세대층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1999년 7월에는 포용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간,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포용정책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포용정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부입장을 설명한 문답집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를 발간·배포하였다.

<주요 홍보자료 발간현황>

자료명	연도	발간부수	비고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98	442,000	팸플릿, 리플릿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22,500	팸플릿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5,000	팸플릿
남북이산가족교류 협력 실무안내	"	500	책자
남북이산가족교류 협력 절차안내	"	10,000	리플릿
통일교육지원법제정, 왜 필요한가	"	400	책자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	"	6,500	책자
통일문답 100	"	16,000	책자
'98통일문제이해	"	11,000	책자
'98북한이해	"	11,000	책자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	100	책자
'99통일문답	'99	20,000	책자
'98 통일백서	"	6,000	책자
통일부 30년사	"	1,200	책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500	리플릿
'99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자
'99 북한문제 이해	"	20,000	책자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	2,000	책자
대북정책 1주년 자료	"	5,000	팸플릿
대북정책 홍보만화 「점프」	"	20,000	책자
대북정책 홍보만화 「뽀리생각」	"	35,000	리플릿
대북정책 기본해설서	"	8,600	책자
포용정책 문답집	"	44,000	책자

또한 남북관계 및 국제안보환경 관련 중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1992년부터 「통일속보」를 발간해왔다. 1999년도에는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결과」, 「남북차관급당국회담결과」, 「폐리보고서 내용」 등 7종의 통일속보를 북한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실상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1973년 슬라이드 「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각종 시청각자료를 제작·보급해 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5,300개)와 비디오 테이프(3,850개)를 제작·배포하였다.

나. 방송을 통한 홍보

대중매체가 지니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전달력을 활용하여 대북정책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라디오와 TV 및 신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다.

<방송을 통한 홍보현황>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1월	'99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관련	정보분석국장
1월	KBS 인터뷰	교류협력국장
1월	MBC 라디오 '뉴스광장' 이산가족문제	장 관
1월	KBS TV '남북의 창', 새해전망	장 관
1월	MBC, 남북 당국자 대화추진 관련	차 관
1월	YTN '집중조명(신년대담)'	장 관
1월	iTV, 금강산 관련	차 관
1월	MBC 라디오 '격동30년', 분단의 벽을 넘는 사람들	차 관
1월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차 관
1월	KBS 2TV '추적60분', 탈북자 그 후	인도지원국장
1월	MBC 라디오, 신년특집(장관과의 대화)	장 관
1월	KBS 제1TV '뉴스광장', 탈북자 관련	인도지원국장
1월	iTV 민간차원 대북지원방향	인도지원국장
1월	KBS '추적60분', 탈북자 정착지원 등	장 관
1월	MBC '다큐스페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인도지원국장
2월	평화방송 '평화포럼', 탈북자- 그 현황과 대책	인도지원국장
2월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인도지원국장
2월	KBS 1TV '시사포커스', 햅볕정책 1년	장 관
3월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양원입니다'	장 관
3월	K-TV 오늘의 국정, 남북화해협력 중점과제 보고	통일정책실장
4월	iTV, 금강산 관련	교류1과장
4월	K-TV 오늘의 국정, 남북 경협과 교류 관련	교류협력국장
4월	KBS 제1TV, 김일성 87회 생일행사 관련	분석관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4월	KBS-TV 비료모금 출연	장 관
4월	MBC-TV 비료모금 출연	장 관
5월	KBS 1TV, 북한인민계획법 등 해설	분석심의관
5월	K-TV, 대북 포용정책관련 인터뷰	정책국장
5월	KBS 1TV ‘뉴스라인’, 신인장관과의 기획대담	장 관
6월	KBS 1TV ‘시사토론’ 출연	장 관
6월	MBC, 대북비료지원 성금모금 특별생방송	장 관
7월	YTN ‘정치광장’, 험난한 남북대화 커지는 이산고통	차 관
7월	KBS 1TV ‘시사포커스’, 험난한 남북대화 커지는 이산고통	차 관
7월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차 관
8월	K-TV 남북관계 관련 토론	교류협력국장
8월	MBC 라디오 ‘아침을 달린다’, 남북공동수해방지 사업 관련	공보관
8월	CBS 라디오, 남북공동수해방지 사업관련	공보관
8월	KBS 1TV ‘일요신문’, 북한미사일 등 최근 남북관계	차 관
8월	KBS ‘일요스페셜’ 인터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관련	교류서기관
9월	CBS ‘뉴스레이디’, 이산가족문제 관련	인도지원국장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전향장기수 문제 관련	인도지원국장
11월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경수로건설관련	경수로부장
11월	KBS 라디오 특집다큐멘터리 ‘남북교역 어디까지 왔나’	교류총괄과장
11월	K-TV, IMF 이후 남북관계	정책총괄과장
11월	교육방송 ‘생방송 난상토론’, 북한 위성TV 허용관련	정책심의관
12월	MBC, ‘PD수첩’ 프로그램 협조	이산가족과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관련 CBS 인터뷰	장 관
12월	CBS 뉴스레이디	사무국 부장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12월	아리랑TV 기획특집다큐멘터리 인터뷰	교류심의관
12월	KBS 라디오 신년특집 인터뷰	차 관
12월	K-TV, 통일로 가는 길, 새천년 통일한국 전망	차 관
12월	KBS 1라디오, 국회속기록	교류협력국장
12월	K-TV, 신년 인터뷰	차 관
12월	YTN, 2000년도 남북관계 전망	차 관

1994년부터 KBS사회교육방송를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해 오고 있으며, 현재 「통일열차」에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부 실무자 등이 출연하고 있다.

또한 1998년 6월부터 CBS 라디오방송의 「통일로 가는 길」 및 인천TV의 「통일마당 남남북녀」와 K-TV 등 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설명하였다.

특히 1999년 10월에는 EBS-TV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대북포용정책 해설 특집 제작을 지원, 4회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다.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PC통신, 인터넷, 전광판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1992년 7월 6일 천리안을 시작으로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에 「통일·북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상영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최근 통일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사이버매체의 특성을 살려 특정 현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으로서 1996년부터 PC통신 전자공청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1999년의 경우 3차례 PC통신 전자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접속건수가 48,418건에 달했다.

<PC통신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기 간	주 제	접속건수
'98.5.1~5.31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3,104
'98.7.26~8.31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요	6,466
'98.10.8~10.30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	6,000
'98.12.1~12.20	대북정책 및 경수로 재원부담	8,034
'99.3.9~3.31	대북포용정책 어떤 성과가 있나요	10,612
'99.7.9~7.31	내가 만약 북경당국회담 대표라면	18,530
'99.10.4~10.23	쉬리와 페리 이야기	19,272

전자공청회 개최로 PC통신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과 추진성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통일부는 1996년 12월에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 (<http://www.unikorea.go.kr>) 개설하여 통일·대북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최근 남북관계 현안 및 주간북한 동향 등을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까지 약 3년간 총 40여만명이 이용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자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일부 북한자료센타 홈페이지 「Unibook」 (<http://unibook.unikorea.go.kr>) 을 운영하고 있다.

Unibook에는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와 통일문제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 및 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주요 행사’, ‘자유 게시판’, ‘묻기전에 보세요’ 코너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살펴 볼수 있다. 1998년 12월 개통된 이래 지난 1년간 총이용자수가 5만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1970년 이후 1999년까지의 남북회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회담진행경과와 회담결과를 국민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Dialogue」 (<http://dialogue.unikorea.go.kr>)를 1999년 10월에 개통하였다. 30년간의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 등 각종 남북대화 관련 자료가 국·영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라. 시설물을 통한 홍보

통일부는 국민들의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돋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북한관」의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관은 1986년 개관한 서울북한관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말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00만명이 (1999년 422만여명)이 관람하여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실태, 남북한 주요현안,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패널,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등 영상 매체와 함께 북한의 생활용품 716종류 8,071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경기도 파주군)의 경우 관람객들이 북한의 땅과 주민생활상을 목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분단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첨단시설들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돋기 위해 북한의 신문, 도서, 화보를 구비한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으며 북한영화와 북한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1999년 12월

말 기준으로 63,683건의 일반자료와 16,327건의 특수자료 등 총80,010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99년 한해 이용자 수는 25,827명이었다.(총 누계 인원 : 117,797명)

북한관 현황 (11개)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위 치	연락처	개관일	운영기관	전시내역	휴관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0348) T945-3171 F945-3172	'92.9.8	동화진흥 (주)	패널: 50점 실물: 1,153점	연중 무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051) T808-7960 F807-0625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패널: 122점 실물: 628점	연중 무휴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032) T868-0113 F868-0116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패널: 59점 실물: 629점	월요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062) T525-7722 F528-0001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회 광주협의회	패널: 120점 실물: 699점	월요일
청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0431) T256-5050 F220-6742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패널: 77점 실물: 649점	월요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064) T751-0191-2 F751-0193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패널: 51점 실물: 863점	연중 무휴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0392) T682-0885 T682-0088 (FAX겸용)	'88.6.15	통일관광 (주)	패널: 54점 실물: 58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0348) T952-7575 (FAX겸용)	'91.1.25	(주) 임진각	패널: 60점 실물: 500점	연중 무휴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0353) T455-3129 F450-5438	'90.12.15	철원군청	패널: 55점 실물: 568점	화요일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0364) T481-9021 (FAX겸용)	'96.8.14	양구군청	패널: 64점 실물: 789점	화요일
경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0551) T282-2332-3 F281-3950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패널: 150점 실물: 858점	월요일

2. 해외 홍보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데 힘써 왔다.

먼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 외국의 주요 기관 및 여론 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횟수를 늘여 해외 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 조사업으로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각각 발간하여 해외 동포와 외국 연구기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있다.

한편,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KBS 국제방송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1999년 12월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 기	'91~'97	격월간 및 계간지	Information Service	매호600	영어
	'98	월간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2,000	"
부정기	'93	팸플릿	Korea's Unification Policy	15,000	"
		리플릿	Question of Korea Unification	25,000	영·일
	'94	팸플릿	A New Track for Unity	2,000	영어
		리플릿	Coming Together as One	25,000	"
	'95	단행본	A New Track for Unity 등 2종	1,500	"
	'97	팸플릿	An Analysis of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4,000	"
			What We Shall Do for Our Unification	6,000	"
	'98	팸플릿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8,000	"
			韓國新政府の 對北韓政策	9,000	일어
			韓國新政府 對北韓政策	4,000	중어
			Politica hacia Corea del Norte del Gobierno del Pueblo	3,500	서반아어
	'99	단행본	Kim Dae-jung's Policies on North Korea	2,000	영어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3,000	영어
		팸플릿	平和と和解・協力のための 對北韓政策	2,000	일어

<민간단체 해외홍보자료 발간 현황>

(1999년 12월 현재)

단체명	연 도	간 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89~현재	월간	통일한국	매호8,0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81~현재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	매호1,000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진 의미와 정당성 및 호혜적 협력사업의 이점 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1999년에는 제9차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제7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미국 달拉斯, 휴스턴, 호놀룰루에서 개최하였다.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현황>

(1999.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91.9.13	서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92.8.18~19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93.9.20~23	서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94.8.5~7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95.8.16~17	서울	14개국 650명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96.11.21~23	동경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97.9.5~6	서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98.8.17~19	샌프랜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99.10.1	서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 개최 현황>

(1999.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93.11.5~6	미국 L.A	150명	새로운 국제정세하의 문민 정부의 통일과제
제2차	'94.12.1~2	미국 뉴욕	150명	동북아시아 신질서와 향후 남북한 관계
제3차	'95.12.7~8	미국 L.A	200명	광복 50년, 통일과 한민족의 미래
제4차	'96.8.29	캐나다 토론토	120명	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제5차	'97.10.6~9	미국 시애틀 캐나다 몬트리올	100명 85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대책방향
제6차	'98.8.20~22	캐나다 밴쿠버	110명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제7차	'99.10.28~11. 3	미국 달라스, 휴스턴, 호놀룰루	560명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3. 행정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8년 1월 시행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통일부도 국민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통일부가 만들어 보유중인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문서평가심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통일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요정책사항, 유관법령내용, 각종 간행물 및 행정자료, 통일부 조직 안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1999. 1월 ~ 12월)

청 구	처 리 현 황				비 고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9	9	5	4		이의신청 : 1건(기각)

* 부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영업상 비밀 또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 및 정보의 부존재 등임.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1999년에도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금강산관광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경수로건설 지원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국민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계기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서해교전사태 및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때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99 여론조사 실시 결과 >

(1999.12.31 현재)

구분	일자	대상	주 요 내 용
1차	1.12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70.3%가 적절하다고 평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59.8%가 긍정적인 평가
2차	1.13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71.1%가 적절하다고 평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83.5%가 긍정적인 평가
3차	3.13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추진방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대해 88.4%가 적절하다고 평가 - 남북현안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84.9%가 지지
4차	5.1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80.3%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 - 특히 북한을 이해하는데 76.2%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5차	10.2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추진방향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관계의 진전 대해 66.0%가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70.0%가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평가

2. 자문기구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의 종합, 평화통일 의식의 고취, 그리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11월 28일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그 기능에 맞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9년 5월 19일 새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는 강원룡 의장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들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여론 수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19~20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대전(5.19~20), 광주(9.8~9), 부산(9.29~30), 전주(10.20~21), 청주(11.2~3), 춘천(11.19), 제주(12.9~10) 등 8개 지역에서 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 통일고문 명단 >

(1999.12.31 현재)

성명	소속 및 직위
강원룡(의장)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강만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수환	추기경
김영준	전 농림부장관
김종하	전 대한체육회 회장
김진현	문화일보 사장
김창열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종화	세계선교협의회 중앙위원
변형윤	제2건국추진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성명	소속 및 직위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병형	성우회 부회장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전 정무2장관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장
장기천	전 KNCC 통일위원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영식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명현	전 노동부장관
최영철	전 통일원장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위원을 재위촉하고 있다.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1999.3~2000.2)

성명	직책
이상우(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학준	인천대 총장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웅서	고려합섬그룹 대표이사 사장
안병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기평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정행	대한매일 논설위원
최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황병무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장

다. 정책자문위원회

중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1999년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교육홍보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1999.8 ~ 2000. 7)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교육홍보 분과위 (7명)
유병화 (위원장 : 고려대 교수)	도홍렬 (위원장 : 충북대 교수)	이장춘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장)	백충현 (위원장 : 서울대 교수)	신정현 (위원장 : 경희대 교수)	박찬세 (위원장 : 배제대 교수)
권민웅 (前 북한문제 조사연구소 자문위원)	홍승길 (관동대 교수)	최대권 (서울대 교수)	이상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김구섭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세구 (서울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원장)	강성윤 (동국대 교수)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주간)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재림 (숙명여대 교수)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교육홍보 분과위 (7명)
장명봉 (국민대 교수)	연하청 (명지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국제법제 연구실장)	안병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김동규 (고려대 교수)
이원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전홍택 (KDI 연구조사실장)	신영호 (고려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문용린 (서울대 교수)
박상섭 (서울대 교수)	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	김경량 (강원대 교수)	최대석 (동국대 교수)	김용호 (한림대 교수)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위원)	김문환 (서울대 교수)
노경수 (서울대 교수)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일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유종숙 (동방기획 부국장)					
전득주 (승실대 통일정책대학 원장)					

3. 민간통일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계기로 활발해졌고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1998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212개 통일운동단체들이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가 결성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반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9년 8월 15일 민화협에서 개최한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손잡기 대회」는 통일관련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행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문제 관련 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 단체는 1999년 12월 말 현재 총 73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또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장관 표창·상장 수여, 통일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통일관련 자료 배포 등 지원이 있었다.

제4절 북한자료개방 추진

1. 북한자료 공개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1990년 3월부터 서울 북한자료센타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상영해 온 북한영화를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단체 관람 등 일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북한영화는 1999년 한해동안 132회를 상영하여 13,991명이 관람을 하였다. (누진 총계 : 521회 47,485명)

또한 1989년부터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 이탈주민을 초청,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 등에 대해 토론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1999년 한해 동안 20회 4,662명이 참가하였으며, 1999년 12월 말까지 누진된 총 횟수는 203회, 참가자는 14,057명이었다.

1999년에 들어 북한자료중 비이념적인 성격의 자료를 선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 중 61종 576건을 공개하였고, 2단계로는 1999년 12월에 북한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 2000년에 북한영상자료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최첨단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주요 북한 원문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을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회담자료 DB 등 관련 DB와 연계도 추진하는 등 북한 정보자료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방송매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중매체이다. 만약 남북한주민들이 상대방의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나아가 북한 바로알기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북한이 대남비방 방송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방송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이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통한 북한 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본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10월 22일부터 북한 위성TV 방송에 대한 시청을 허용하였다.

우선 방송사 등 언론사에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북한자료센타, 통일 교육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번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되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향후 정부는 북한방송의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 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1. '98, '99 통일정책관련 주요 연설문

(1)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입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년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 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인간혁명으로부터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5대 혁명을 거쳐 인류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시대로부터 세계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고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올 한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잘못은 지도자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생활의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애국심과 저력에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 후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심과 의욕에 충만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같이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준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회의체산업·영상산업·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지식정보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천3백여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전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궁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열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입니다.

(2)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1998.3.1 김대중 대통령 제79주년 3·1절 기념사

남북한과 전세계에 계시는 7천만 동포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3·1절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 말엽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의 정점이요, 자랑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우리 국민은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40년동안 국내에서, 그리고 시베리아·만주·중국 본토에서 일제에 무장투쟁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식민지 역사에도 찾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9년만에 일어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 수립된 정부가 왕정복고를 지향한 정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인 ‘민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환 때까지 26년간 일본의 중국 침략 와중에서, 중국 대륙을 떠돌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의 이름을 수호한 이것 또한, 세계에서 예가 없는 놀라운 독립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위대한 조상들의 열과 업적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그로부터 79년 후인 지난 2월 25일 이 나라에는 다시 한번 국민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국민에 의해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룩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오늘이야말로 79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열들과 우리 국민들의 거룩한 정신이 최초로 실현된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랍니다.

3·1운동은 대화합의 절정을 이룬 국민적 총참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국 13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좌우사상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 즉,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대서사시였고 대행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재도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 우리 국민의 자세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화합하고 동서가 화합하고 노소가 화합하고 남녀가 화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대화합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발현되고 우리들의 조상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국난극복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날 금융위기라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다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러한 대타협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심각한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러한 대타협을 이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생활의 고통을 무릅쓰고 대타협에 동참한 그 애국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통분담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으로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된 개혁을 실현

하고자 힘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개혁은 당장은 고통도 따르지만, 장차 여러분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정부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봉급의 동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없이는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국심과 성실성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지위안정, 생계보장, 이직자에 대한 사후대책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 정부 산하기관 어디에서도 이제는 자연과 학연 혹은 이해관계 등 부조리한 관계에 의한 왜곡된 인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양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조상들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일치협력했듯이 이 나라의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노·사·정 3자가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전위대로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애국심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아프게 느끼는 것은 선열들의 민족독립투쟁을 위한 희생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통일을 이루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상존하는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우리는 이산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상 그 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조상 앞에 민망하고 세계를 향해 부끄러운 일입니까. 1300년간을 통일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적대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제거하는 것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변화는 남북 쌍방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 불가침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한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다시 한번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고령에 있는 그들은 천추의 한을 품고 매일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의 협의 등 어떠한 방식도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병행해서 4자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정신을 간직합시다. 민족독립과 국민의 행복을 그토록 염원하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뜻을 기어이 받들고 실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시다.

이 정부는 여러분이 만든 정부입니다. 3·1선열들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드시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저는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됩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선진국가로 만들 시다. 3·1애국 선열들의 열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7천만 민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자유와 번영과 통일에의 믿음을 굳게 간직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3)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1998.8.15 제53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십수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주시민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혹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지

만, 용기 있는 국민에겐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 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저는 잠시도 쉴 틈없이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은 다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가 창설되어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의 4대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ASEM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 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은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국제경쟁력은 취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도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는 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저효율과 고비용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적으로 고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크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 정보혁명, 첨단기술혁명, 벤처기업혁명, 그리고 문화산업을 이끌어 잘 인재양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난극복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게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난의 시기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여러분이 명령한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혁신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기초로 그 실천 원리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의 건국운동」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운영의 6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상시키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국적인 지역대립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가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4천5백만 국민의 대통령이자 7천만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역의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의 국회제도도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도 공약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든 국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 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입니다.

둘째는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인만이 애국적 기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아래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바꾸기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듯 관치경제의 폐습을 일소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2의 건국」 이 지향하는 경제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WTO체제는 앞으로 수년내에 경제적 국경을 없앨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친구삼아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좋은 이미지야말로 수출과 관광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주의야말로 「제2의 건국」 아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넷째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교육입국의 이상아래 오늘의 소모적인 교육을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꾸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덕·체 삼위일체의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실력있는 학생만을 졸업시키고, 학별주의도 타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가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21세기의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이 곧 「제2의 건국」의 이상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에 바탕을 둔 신뢰는 「제2의 건국」의 기초입니다. 특히 저는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노사 쌍방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의 사명을 띠고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공정한 여건 속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말까지 쟁의가 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 10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실업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예외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공공취로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제2의 건국」이 추구하는 신 노사문화 창조를 위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원칙, 즉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은 상호 교류협력을 실현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육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애태우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장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

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철학과 자유·정의·효율의 3대 원리 아래,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 세계주의와 지식기반 국가의 실현, 신노사문화의 창조와 남북간의 교류협력 촉진 등 앞서 말씀드린 6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제2의 건국」의 나아갈 길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국민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의 건국」의 가치 아래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난을 타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고생도 같이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합시다.

저는 일생을 국민 여러분 곁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40년 넘게 감내해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식과 문화의 시대라면, 조상으로부터 유별난 교육열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제2의 건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과 같이 ‘98년은 전면적인 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99년말까지는 IMF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참여하는 민족의 재도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민주대한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봄 받쳐 싸우다가 먼저 가신 애국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4) 1999년 대통령 신년사

1999.1.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9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힘차게 내딛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98년 한해동안 우리 모두는 파산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은 흔쾌히 참아내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모두는 환란을 이겨냈으며, 올해 부터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방

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밝은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경기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인내 그리고 이대로는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와 노력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8년은 절망과 불안속에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수 많은 시련속에서도 기어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우리 국민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을 기해서 이 땅에는 5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룩된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전례없는 국난의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열정과 각오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향한 공동의 깃발아래 국난을 힘차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협력과 동참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모으기운동을 비롯하여 실직가정돕기운동, 수재민 구호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대개혁을 성공시켜 나라경제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금융·기업·공공부문 그리고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구국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환란에 처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낙관은 이르지만 시련의 한 해를 보내는 제야의 종소리는 이미 전국을 메아리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시련의 한 해를 국민과 같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국내는 물론 우방국가와의 관계에서 혼선을 거듭 하던 대북한 정책 역시 지난 10개월 동안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되었고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하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은 가장 적절한 대북한 정책으로서 국민과 세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잠수정 침투, 미사일 발사나 지하 의혹시설 구축 등 도발행위를 거듭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조심스럽게나마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국과 공조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계울리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올해에 나라경제를 다시 한 번 성장의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진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여러분께 "우리는 '98년 이 해에는 경제개혁의 큰 테두리를 마무리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99년 중반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작할 것이며, 2000년부터는 도약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러한 예견을 지나친 낙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균열성, 우수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6.25의 폐허위에서도 일어섰듯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저력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저의 체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국민적 단결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사련을 수 없이 극복한 민족입니다. 우리 대에 와서 이를 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해서 빚더미의 나라를 후손에게 넘겨 준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기반국가를 이루어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노사공동운명의 새로운 노동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확고히 고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열린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혁명기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 남고 승리하려면 국민적 단결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이기주의는 망국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을 합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인사를 편파적으로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도 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한 국민의 총체적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구국의 길로 나아가는 21세기를 향한 국민적 대전진인 것입니다. 국민운동이 정치를 초월하고 파당을 초월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실패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민관의 의식이 개혁되고 구국의 활동과 노력이 힘차게 일어선다면 우리가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찬란한 성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같이 나아간다면, 20세기 끝을 향해 다가서는 1999년 이해에 우리는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찬란한 희망의 21세기가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제80주년 3·1절 기념사

1999.3.1

존경하고 사랑하는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1운동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위대한 선열들의 높은 뜻과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1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독립을 다시 찾자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에도 영향을 준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민중이 자발적으로 펼친 민중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는 조상들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다같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민족의 긍지를 만세에 빛나게 한 3·1운동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애국심으로 독립투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시베리아와 만주, 중국대륙을 종횡했던 40년간의 무장투쟁을 비롯하여, 해방되는 그 날까지 26년간 법통을 지켜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세계에 펼쳐진 민족의 역사에 그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과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민족은 국난에 처할수록 더욱 굳센 애국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오늘날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환란이 닥치자 우리 국민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2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을 모았고, 일터마다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찬탄했던 우리의 국민적 저력으로 1년만에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에 따라 48억달러의 IMF의 빚을 이미 갚았고, 금년 내에도 77억달러를 더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환란 당시 38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지금 5백20억달러라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87억달러의 적자에서 1년사이에 3백99억달러의 놀라운 흑자로 돌아섰으며, 환율과 금리도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되었습니다. 물가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되었고, 금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는 작년 89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결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피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3·1구국정신의 위대한 구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금융·기업·공공부문과 노동부문 등 4대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오직 그길 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수출이 되고, 수출이 잘 돼야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야 빚도 갚고 만일의 외환불안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대개혁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활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합심으로 이 개

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이 입고 먹고,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네가지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나아가 일터를 늘리기 위해 고용능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정보산업,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 1백8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금년 말까지 1백50만명으로 감소시키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욱 안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제 대기업 중심의 은행대출이 작년 4/4분기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작년 4/4분기에 대기업 대출은 6조원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고르게 분담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경제가 궤도에 오르면, 노동자와 농민이나 서민, 중산층 등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재벌이나 특권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을, 저는 3·1 영령들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7천만内外동포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3대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 남북이 서로 화해·협력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영해 나가자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미 냉전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소 두 나라는 화해를 했고, 그 중에 소비에트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만 동족간에 전쟁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냉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산주의자의 침략이나 지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북한 7천만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최소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같이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민족 전체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에 책임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헷별정책을 추진한 이후, 남북관계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북한 간첩선 출몰과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4자회담 재개와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미·북 협상, 7년만에 재개된 장성급회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으로 이미 3만명의 사람이 다녀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북한 헌법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일부 도입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의심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전쟁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안보태세를 철저히 강화해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능히 격파할 수 있는 준비위에 이러한 화해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단호한 자세를,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석방된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갈망하는 국군포로나 억류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천만 민족 모두의 아픔인 이산가족들이 하루속히 상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 등지의 산야에서 싸우다 귀중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던 선열들의 애국심을 감사와 존경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열과 행동을 본받아 우리 앞에 닥쳐있는 경제적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부조리, 부정부패, 지역주의, 이기주의 등을 청산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제2의 건국」 운동이 힘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3·1정신으로 구현된 우리 선조들의 열을 굳게 지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선진대열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선열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구국의 큰 길을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의 동참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6)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나갑시다

1999.8.15 제5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4주년을 맞는 날이자 새천년을 앞둔 20세기의 마지막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먼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명복을 빕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저는 지난 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사를 돌아보며 아울러 새천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한마디로 좌절과 불굴의 헌신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의 위정자들은 세계의 큰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근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혁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국민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치욕스러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순간부터 해방의 날까지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 식민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해방 후 뜻하지 않은 국토분단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8일,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국민의 투표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정권교체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체제의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이후의 국난인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조선왕조 말엽과 같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또다시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온갖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IMF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1년 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감소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에서의 도전을 초전에 저지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다.

그러나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내각책임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정치는 지금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져서 국회가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합의했던 자민련과 상의 끝에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분할 구도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입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서 선거부정의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정당법을 고쳐서 정당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에서 본회의 중심의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정심의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정치가 토론과 상호협력의 장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대로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강행통과도 표결저지도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인권국가을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고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습니다. 저는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밝고 바른 법치를 더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법제도를 이루고자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논의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당이 되겠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 할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고 갈 정당이 되겠습니다.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견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여서 폭넓고 튼튼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경제번영을 이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주력해서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개혁을 더한층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재벌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며, 변칙상속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재벌에 대해서도 투명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제2의 기아사태」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인 농업과 섬유, 전자,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지식을 활용한 농어민의 성공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반동안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임기 안에는 세계 일류의

경제발전과 건전한 경제체제를 이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0,0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2002년까지는 1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실업자를 백만명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서 지난 수십년간의 채무국에서 벗어나 머지 않아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되는 순채권국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끗한 나라,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정부패의 척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습니다.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도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료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돋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겠습니다.

농어가 부채의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민의 연대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입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 명에게는 학비를 무상지원을 해주고, 대학생 30만 명에게는 장기 저리용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탁아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제도를 고쳐서, 2002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해방지 등 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화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여건과 스포츠 레저시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합니다.

저는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안보를 위해서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남북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가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전세계가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세기입니다.

국토의 넓이나 돈과 자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창의력이 국가 운명을 가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는 한국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교육 전통과 오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도 중국화되지 않았던 문화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의 주체가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새천년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지식기반 사회, 문화창조의 기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과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새천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역사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IMF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한번 국민 여러분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너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희망속에 이 다리를 건너가실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정의를 투철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안보와 화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잘해야 나라가 일어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제2의 건국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 통일정책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관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 조정
 5.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 · 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9 조(남 · 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 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남 · 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반출 · 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 ·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 ·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 · 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 · 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 ·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993. 3. 6
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0호(상	
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 세법 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5.12. 6	대통령령 제	
14819호(병역법 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외국환관리법 시행령)	1996. 8. 8 대 통
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우	
편법 시행령)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제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을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 · 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 · 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

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4'장 교 역

제25조 <삭 제>

-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

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

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

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4)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1996.12.12	법률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건 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93.12.31>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 공채의 매입
2. 재정용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부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9.5.23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 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 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 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 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이상의 지원 2.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 · 협력에 대한 지원 7.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 · 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미만의 지원 3.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자금지원 ·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생략>

● 북한이탈주민관련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정 1997. 1.13 법률제5259호

개 정 1999. 1.21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1999.12.28 법률제605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 · 세대구성 · 학

력 · 경력 · 자활능력 · 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12.28>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 · 마약거래 · 테러 · 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협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4. 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 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별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99.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8조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	1997. 7.14	대통령령 제15436호
개 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
	1999. 3.31	대통령령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 개정령)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 직제)	
	2000. 1.28	대통령령 제1669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별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8>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3.31>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99.12.31>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

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자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2조(임시보호 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첨보를 가지고 있는 자제15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8.12.31>제24조(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돋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조 이양 제35조의3, 2000.1.28>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8.12.31>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②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 급여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제34조의3(우선구매)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신설 2000.1.28>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2. 1년 이상 월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제35조(취업알선)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등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1.28>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② 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신설 2000.1.28>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2000.1.28>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 상인자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8.12.31>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98.12.31>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 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 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 · 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 ·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 · 기관총 · 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 ·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2. 국내의 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미만의 자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 ·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 · 치의학 · 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1> 제47조의2(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장애인

2. 모자(母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2000.1.28>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자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관련

(1)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

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

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1) 7·4 남북 공동성명

/ 1972.7.4 발효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만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 인정 · 존중

-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뼈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제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불사용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 5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 6 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

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 3 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 9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 계 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 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 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 4 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 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 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 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 5 장 협의 · 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종과 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⑯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은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흘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흘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5.7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1995.3.9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 2 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2)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 3 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협력기여의 수령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 4 조

-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 5 조

-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 한다)이다.
-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 6 조

-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회원국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

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 를 지닌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한 시 일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 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 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 회가 결정적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기구(KEDO)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와 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원회원국 및 기타 집행이사회 회원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게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9 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다.

나. 각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 10 조

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자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자항에 규정된 대로 분배된다.

제 11 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 12 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우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검사보고서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3 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계약의 체결, (2)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14 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 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개정은 서면 개정합의문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90일후에 발효된다. 동 서면 합의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집행이사회 회원도 동 합의문의 사무총장에의 등록과 개정발효사이의 기간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제 15 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를 작성하였다.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
/ 1995.12.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체 측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수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 2 조 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

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사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해 북한은 추가비용의 책임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작위로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 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 정한다.

제 3 조 인도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2부속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이 협정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건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이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이행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인근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와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에 독립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의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 영역 내에서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부지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부구조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6 조 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 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후 2년동안 그러나 당해 주요부품의 선적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 제작기술, 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7 조 훈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8 조 운전 및 유지보수

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을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 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9 조 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인도 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료가 고려

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내의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 제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장입후 시운전시험 결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도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일치하는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발전소 완공 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11조 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와 관련된(1963년 5월 21일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 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2조 지적재산

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 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재산’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 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

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문질이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영역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을 북한에 공급하는 KEDO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은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사업 일정의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제15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벌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17조 개정

1. 이 협정은 협정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제 1 부 속 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 부지조사
2.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3.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 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5. KEDO가 2기의 경수로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 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장기계실을 포함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7. 발전소 인수시까지의 요구되는 모든 시험
8.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공구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장전용 핵연료10. 완전한 범위의 모의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서비스12. 전반적인 사업관리

제 2 부 속 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 확보2.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3. 2기의 경수로발전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있는 운전요원제 3 부 속 서

이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

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함은 원자력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부품의 인도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 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제 4 부 속 서

이 협정의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6.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7. 핵증기공급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발전소 제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4. 남북관계 주요일지('98~'99)

1998

1. 7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정원식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방송편지를 통해 비전향장 기수 송환 요구 1.17 북한, KBS의 「진달래꽃 필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북한 향산호텔)
- 1.22 한·미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 2.5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2.5 미국, '98년분 대북 식량지원 20만톤 지원 발표
2. 5~6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12 유엔, 4억불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 2.15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발표 2.17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한간 관제 통신망 개통(1회선) 2.18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 2.19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조선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2.19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측의 편지접수 수락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3. 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특사교환 촉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3.9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발표 3.10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3.11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3.13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
- 3.14 4자회담 제2차 준비회의 개최(제네바)
- 3.16~21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3.18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3.19~20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3.25~27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4.4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비료지원 요청 관련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4. 6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4.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북경 고집
4.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북경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4.10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4.2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로 이용개시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 시행
- 대기업 · 경제단체의 수시방북 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 · 규모제한의 완화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5. 5~9 KEDO-북한간 제5차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묘향산)5. 8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5. 8 EU, 북한 농업실태 조사단 파견
6. 1~2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6.15 북한, 8·15 대축전 관련 대남 편지 전달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6.15 8.15 대축전 관련 북측 편지 접수
- 6.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판문점 경유)6.22 장인덕 통일부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6.23 판문점 장성급 회담
- 6.28~29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브랸셀)6.30 판문점 장성급 회담
7. 9 자유의 집 준공
- 7.12 묵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 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7.27~28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가서명)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장 · 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8.18 북한 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8.20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8.21~9. 5 미 · 북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 8.31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9.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9. 3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결성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막
9. 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9.10 미 · 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 완료
 - 연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9.20 북한 평양방송,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9.23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 회의 개최(서울올림픽 제1경기장)9.25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타 개소(이북5도위)

9.30 국군포로 장무환씨 귀환

10.16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 해명문건
통보 10.21~10.24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기탁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10.31~11. 7
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평양)

11. 9 KEDO집행이사회(뉴욕)

-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6회선)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2. 1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결의안 12.13 통일
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관련 논평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12.14 국회결의안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

1999

1. 1 김대중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과 공조해 절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지만, 북한의 궁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1. 4 김대중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일안보관련 3대
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②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1.15 정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
승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및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긴요함을 재확인
-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재강조

1.16~24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 미국 : 카트만 한반
도평화회담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보상의 다른 형식으로 '정
치·경제적 혜택' 을 언급 - 미국은 보상은 불가하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용의가 있음을 표명 1.19~22 제4차 4자회담(제네바)

-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분과위 개최

1.30~2.6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교수 방북

- 북한 1천여개 마을에 개량 옥수수 재배키로 북측과 합의 발표 2. 3 북한, 정부·
정당·단체연합회의,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 선행 실천조건으로 ①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 국가보안법 철폐 ③ 통일애국단체·인사들의 활동 보장 제시 2. 9
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미·북간 금창리협상 조기타결 희망, 북한의 대포동 2호 추가실험에 동북아의 안
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2.10 정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 2.11 판문점 제4차 장성급회담 개최
- 2.22~3.11 현대그룹 서해안 공단 실무협의단 23명 방북2.27 미·북 금창리 핵의혹 시설 관련 제4차 협상 개시(뉴욕)2.28 금강산 휴게소 및 공연장 준공
* 분단후 최초로 설립된 남북 공동 민간 건축물
3. 9~11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방북3. 9 판문점 제5차 장성급회담 개최
- 3.11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 - 3.15부터 6.15까지 모금활동 전개 방침
- 3.16 미·북 금창리 핵의혹 시설 관련 제4차 협상 타결(뉴욕)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99년 5월 미국 조사단의 금창리 시설 최초 방문 및 추가 방문을 허용
-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을 지원
-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3.1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촉구 국회결의안 및 국회의장 서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전달3.25 외교통상부장관,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내 인권문제 제기3.29~30 제4차 미·북 미사일 협상(평양)
* 미국 :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북한 : 한창언 외무성 북미국장3.30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 5,000톤 지원 계획 발표
- 3.31 남북한 화물선, 스리랑카 해안에서 충돌
- 4.10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금강산)4.23 남북 비공개 접촉 개시(북경)
- 4.24~27 제5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4.26 김대중 대통령,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 성사를 찬성한다고 언급
* 겐나디 셀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 면담
- 4.28~5.4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 논의
5. 5 김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과제' 제시 * CNN 주최 제10회 세계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
- ①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② 남북간 화해·협력, ③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⑤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5.14~15 미 카트만 특사 방북, 금창리 현장조사 협의
- 5.18~24 금창리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단(단장 : 미 국무부 조엘위트 과장) 방북5.25~28 폐리 대북조정관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 김영남, 최태복, 김계관 등 면담
- 5.28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의 지하핵의혹 시설 건설기록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5.31 통일부,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6. 3 남북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등 협의(북경)6.3~6.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중국 공식 방문 - 장쩌민 국가 주석 면담, 상해 등 지방도시 방문
- 6.8~6.15 북측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 6.10 정부, 대북비료 20만톤 지원에 필요한 자금 중 민간모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남북협

- 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6.15 북측과 우리측 해군 서해상에서 교전 사태 발생
 판문점 제6차 장성급회담 개최
- 6.16 북 조평통 대변인, 남한측 인사 평양방문 제한 발표6.20 북한, 금강산 관광객 1명 억류, 6.25 석방
 * 6.22부터 금강산 관광 중단, 8.5 재개
- 6.22~26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 6.23~24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이징)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6.25 정부, 금강산 관광관련 '선(先) 안전보장 후(後) 관광재개' 방침 발표6.28 현대, 아·태측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협의 착수(북경)7.1~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7. 2 판문점 제8차 장성급회담 개최
 한국 정부, KEDO에 32억 달라 차관 공여 서명
7. 4 민화협,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제의 발표7. 8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개원
7. 9 현대 장전항 건설 인력 108명 방북
- 7.21 판문점 제9차 장성급회담 개최
- 7.25~29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 개최(북경)
8. 1 통일부, 금강산 관광 8월 5일부터 재개 허용 발표8.3~9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 협의
- 8.5~9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8.9~8.14 민주노총 축구선수단,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8.12~13, 평양)
- 8.11 정부, 한적 총재 명의 대북서한을 통해 임진강 수계의 남북공동수해방지 추진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제의8.12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8주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키로 한 '6.3합의' 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8.15 김 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개최(서울 서대문~경기도 파주군 통일대교 : 53km) 북,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최
- 8.16 경수로기획단, KEDO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수로부지공사를 12월 15일까지 4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8.17 판문점 제10차 장성급회담 개최
- 8.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과 미사일협상 용의 표명8.20 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기근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황에는 훨씬 못미친다' 고 언급8.23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군사사절단 정례 교환 방문 합의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공조 확인
 - 8.31 북한 적십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 서한 발송 8.31~9.7 원로화가 10명, 북녘 산하기행차 방북
 - 9. 1 판문점 제11차 장성급 회담 개최
 - 9. 2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 - '서해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
 - 한·러 국방장관 회담 개최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정에 저해된다는 인식 확인 9. 3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발표
 - 우리 정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고수방침 재확인
 - 9.7~12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 및 타결(베를린)
 -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 9.14
 - 북한 외무상 백남순 일행, 제54차 유엔 총회 참가차 뉴욕 방문 9.15
 - 미 폐리 조정관, 의회에 대북정책 권고안(폐리보고서) 보고
 - 향후 대북정책은 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 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②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③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등 3단계로 추진
 - 당면한 5개 정책 ①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 정책 ②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인사의 조정관 임명 ③ 한·미·일 공조를 위한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유지 ④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⑤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제시 9.17
 - 미 클린턴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3개 법안에 의해 규정된 ① 물자 수출입 ② 금융거래 ③ 투자 ④ 북·미간 항공기·선박 운항 분야의 제재조치 해제
 - 그러나 테러국 지정,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인 ① 무기·방산 물자 수출 금지 ② 원조금지 ③ 최혜국 대우·일반 특혜관세(GSP)·수출입은행 보증 금지는 제외 9.18
 -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발표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지
 - 9.20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국회 비준
 - 9.20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안전이행 촉구문 채택(빈) 9.22~24 폐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한·일 방문
 - 9.22 남북 임업전문가 회의 개최(북경)
 - 북한의 산림 복구문제 논의
 - 9.24 일본 오부치 수상, 폐리보고서 지지 표명
 - 북 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 9.25 북한 백남순 외상,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북 회담 기간동안에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 9.27
 - 북한 백남순 외상, 기자회견에서 통일3대원칙과 북한의 협상체의에 남측이 응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언급 9.27~10.1
 - 현대 농구대표단 남북 통일농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통일농구대회(9.28~29, 평양)
 - 9.27~10.2 북한-KEDO 간 고위급 회담 개최(묘향산)
 - 9.28~10.2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 김정일 면담(10.1)에서 서해공단 개발문제 협의
 - 9.29 현대그룹, 평양 실내 종합체육관 건설 착공

10. 1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에 핵안전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빈)10. 3
김종필 국무총리,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성실이행과 화해협력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10. 4 4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박건우 본부 대사→ 장재룡 차관보)10.5~9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중관계 수립 50주년 기념차 방북 * 백남순 외상 등과 회담
10. 8 미·북, 미군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 합의 -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가 인수하던 관례 변경
- 10.14~17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방북, 금강산지역 솔잎흑파리 방제약 효과 조사10.19
김대중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10.20~26 미 국무부 관리와 국제개발처 요원 방북
- 북한 식량분배 투명성 검증
- 10.2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침 개정
- 대북교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민간인 인도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일본, 경수로사업 재원분담금 협정 서명
- 10.22 통일부,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타에서 시청 가능
- 10.23 주한외국인 대상 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10.25 미국, 미군유해 4구 평양에서 직접 송환
- 10.26~27 남북한 해외학자 통일회의 5차회의 개최(북경)10.29 담배인삼공사
- 광명성총회사, 담배 공동생산·판매 합의 발표11.1~20 서해공단 후보지 조사단 16명
방북
- 신의주, 해주, 남포지역 시찰
11. 2 일본, 일·북간 전세기운항 동결조치 해제 발표11.3~4 북, 제2의 천리마대진
군 선구자대회 개최
11. 6 미국, 대북 중유 50만톤 지원 완료
- 11.6~13 김경재의원, 방북
- 통일음악회 개최 협의
- 11.9~16 김정배 고려대 총장 방북
- 2000년 개천절에 평양에서 단군학술토론회 개최 합의11.15~19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베를린)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11.15~19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위원장 방북 -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원칙적 합의, 그러나 월드컵 분산 개최는 곤란 확인11.24 정원식 한적 총재, 북적 위원장에 편지 발송
-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서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12.1~3 일 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북 - 김용순 당비서와 회담 및 오부치게이조 일본 총리의 친서 전달12. 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평양)
-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들 참여
- 12.14 일본, '98 미사일발사 이후 취했던 대북 제재조치 해제12.15 KEDO, 한전
과 경수로 주계약 체결
- 한전은 1백만 Kw급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제공12.15~17미·

북 미군 유해 발굴 협상(베를린)

* 미국 : 앤런리오타 국방부 부과장, 북한 : 박임수 판문점 대표부 대좌12.16 민화협, 판문점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남북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개최 제의 서한 전달12.19~20 일·북 적십자회담 개최(북경)

- 대북 식량지원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협의

12.20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남북예술인 공연 및 녹화중계 실시

12.21~22 일·북 수교 예비회담 개최(북경)

* 일본 : 아나미 고레시게 아시아 국장, 북한 : 오을록 제14국장

12.22~25 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 62명(단장: 송호경) 서울 방문 -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12.23~24, 서울)

- 조선중앙TV 녹화중계(12.25~26)